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7. 4. 26.(수), 14:00 ~ 16:1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 출석의원 : 김학범, 김용준, 류제헌, 이두표, 이상석,
전영우, 황재하
(이상 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공개)
2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내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공개)
3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	(공개)
4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내 해상유어장 설치	(공개)
5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신례리)	(공개)
6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하례리)	(공개)
7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인도교 설치	(공개)
8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9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	(공개)
10	「용천동굴」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11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내 화장실 신축	(공개)
12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주변 라온 프라이빗타운(3차부지) 조성 공사	(공개)
13	「보길도 윤선도 원림」 보호구역 내 보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축	(공개)
14	「진도 고니류 도래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15	「성신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16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17	「제주 방선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마련	(공개)

【검토사항】

18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보호구역 지정 검토	(공개)
19	「통영 홍도 팽이갈매기 번식지」 공개제한지역 출입 및 촬영허가	(공개)

【보고사항】

2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81건)	(공개)
----	-----------------------------	------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7-04-01

1.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소재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임
- 경 과
 - 2017년 제2차 천연기념물과 위원회(17.2.22)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예고일 : '17. 3. 3 (문화재청 공고 제2017-96호)
 -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예고기간 : '17. 3. 3 ~ 4. 1
 - 지정 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번지
 - 지정일 : 1993.08.19
- (3) 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1필지(593m²)

(단위 : m²)

소재지	기 지정 면적			추가지정 면적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필지	지적 면적	지정 면적	필지	지적 면적	지정 면적	필지	지적 면적	지정 면적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	448,165	448,165	1	593	593	3	448,758	448,758

(4) 지정 사유

- 추가 지정 필지는 현재 도유지로 기존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문화재 구역과 연접하여 비자나무가 약 30여 그루가 생육하고 있어 문화재구역을 확대·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라. 검토의견(*****)

-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지정 예고(안)대로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함이 타당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의견 / 2017.1.31)

- 현지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신청 대상지의 경우 당초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문화재구역과 연접하고 비자나무가 생육하고 있어 기존 비자나무 숲을 연계하여 확대한다는 점에서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구역 해제를 신청한 지역은 현재 비자림 관리사무소 건물이 있는 곳으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 시설물이므로 문화재 구역 해제는 불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문화재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바.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대상과 범위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주소
1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4-1	잡종지	593	593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 제주시 문연로
합계					593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추가 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주소
1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	임야	447,909	447,909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2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1	임야	256	256	문화재청 (향후 제주도와 교환 예정)	대전 서구 청사로
3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4-1	잡종 지	593	593	제주특별자치 도 (향후 문화재청과 교환 예정)	제주 제주시 문연로
합계				448,758	448,758		

붙임 : 위치도 및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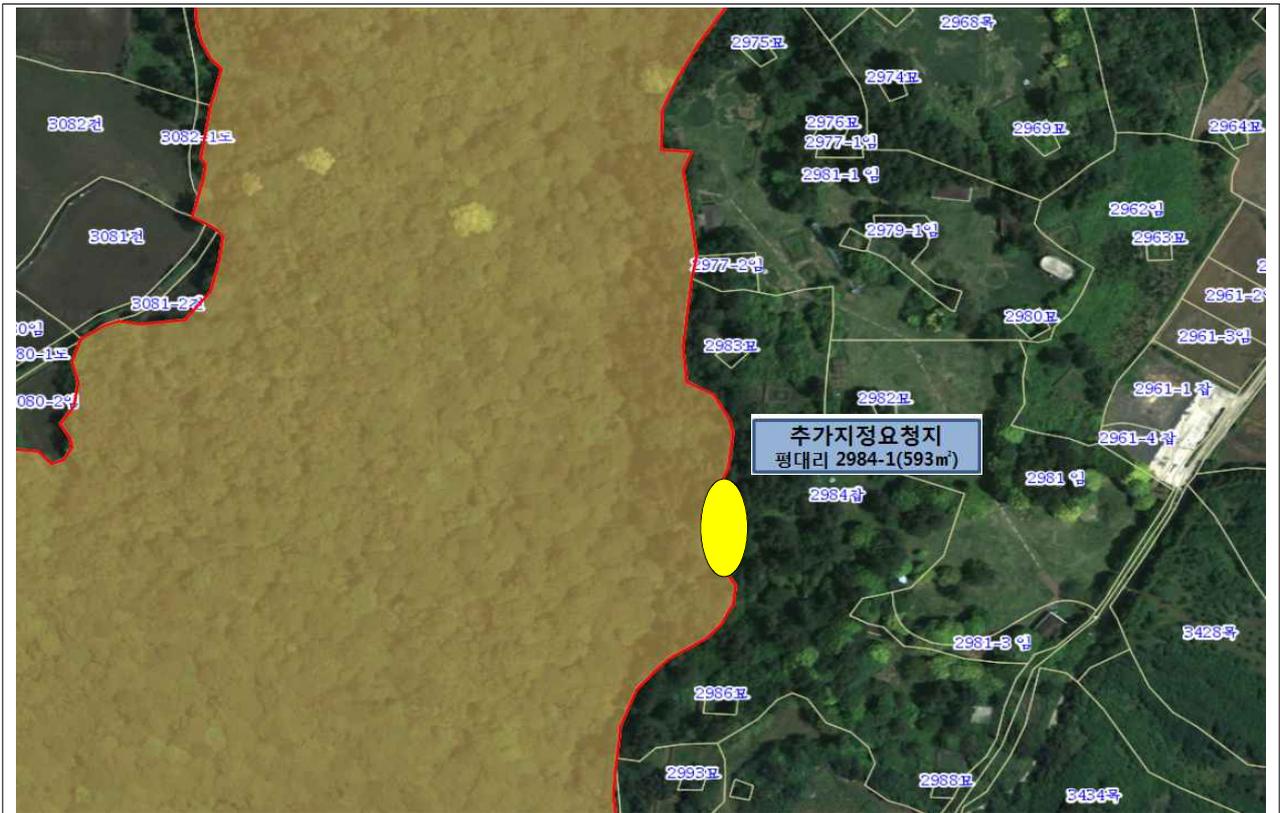
사. 의결사항

-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가결 7명

□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위치도



□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대상지 항공사진



□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대상지 사진



2.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내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가. 제안사항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내 제2순환고속도로(김포-과주) 건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내 제2순환고속도로(김포-과주) 건설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2016년 제5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5.25.)에서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 사유로 보류되었고, 2016년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6.22.)에서 '사업시행에 따라 재두루미를 비롯한 희귀 철새들의 서식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부결되었음
- 금회 신청은 방음벽 설치를 통한 소음차단 등 조류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을 추가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소재지 : 경기도 과주시 교하면 일부, 김포시 한강변의 충적퇴적 지역
 - 지정일 : 1975.2.2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과주) 건설사업
 - 사업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 과주시 과주읍
 - 사업내용 :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과주, 과주대교) 건설
 - 도로 건설 : 3,228m(문화재구역 1,785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443m)

- 파주대교 건설 : 연장 1,895m, 폭원 24.3m, 교각 13개
- 교량형식 : (상부) 콘크리트 상자형교(FCM공법)-하부 동바리 미설치
(하부) 역T형 교대, 중공 교각(우물통기초)
- 폭원 24.3m(4차로 14.4m, 중분대 3m, 갓길 6m, 방호벽 0.9m)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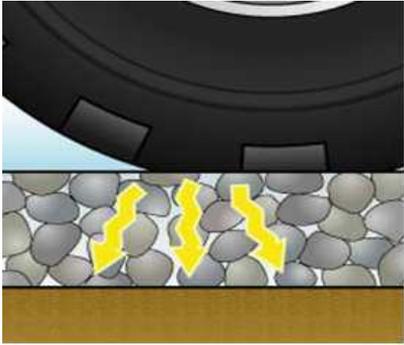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 파주시 파주읍 * 교통량 41,137~52,140대/일
- 연장 : 25.36km(4차로) ○ 총사업비 : 14,960억원

※ 최초 신청사항과 1·2차 변경사항

구 분	최초신청 (’13.10.23/부결)	2차신청 (’16.6.22/부결)	금회신청
교량 형식	강제 상자형교	콘크리트 상자형교 *상부가설 중 하상 장비운영 최 소화로 환경훼손 적고 도장으 로 인한 환경오염 배제	좌동
교량 공법	강박스 거치공법	FCM공법 *동바리 설치없이 교각 위에서 가설	좌동
교각 및 경간장	교각 13개, 최대경간장 150m	교각 13개, 최대경간장(160m) 교각 3개	교각 13개, 최대경간장(160m) 교각 8개 *하중 모래톱 보호를 위한 최대경간장 교각 증설
소음방 지대책	-	저소음 포장 적용	저소음 포장 적용 및 친환경(목재) 방음벽 설치
조명	가로등 조명	좌동	난간조명

※ 조류 보호대책

영향 인자	저감방안
소음· 충돌	· 저소음포장 및 친환경(목재) 방음벽 설치 → 교량구간+교량 전·후 500 m

		
야간 조명	<p>· 소음방지 표지판 등 설치(*변경사항 없음) → 동물보호, 경적사용금지, 과속금지, 상향등 사용금지 표지판 및 단속카메라 설치</p>	  
	<p>· 교량 <u>난간 조명</u> 설치(조명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 고속도로 외부로 빛 확산 방지</p>	 
수질·습지	<p>· 습지구역 교각·교대설치 최소화 : 최대 경간장 적용 → 한강 양안 습지구간은 교각 설치 지양 * 최대경간장(160m) 적용 교각 3개소→8개소</p> <p>· 우수흐름 공사용 가도 설치 지양(*변경사항 없음) → 가교로 인한 습지 훼손 최소화</p>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약 4년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를 관통하여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16년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방음벽 설치 및 난간 조명 등 보호대책을 추가하여 재신청 한 건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4.14.)

- 한국도로공사에서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를 관통하여 교량(파주대교) 및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13년도와 16년도 2차례 부결된 바 있으며, 금회에는 교량상부 구조물을 친환경으로 변경하고 하안습지 및 수질보호 등 보호대책을 추가하여 재신청하였음
-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일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자연스럽게 갯벌과 습지가 형성 보존되어 다양한 갯벌생물 및 재두루미를 비롯한 많은 희귀철새들이 도래 서식하는 등 자연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으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마땅한 자연유산임
-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건설은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일대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보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재 구역을 우회하거나 지하로 건설할 것을 권고함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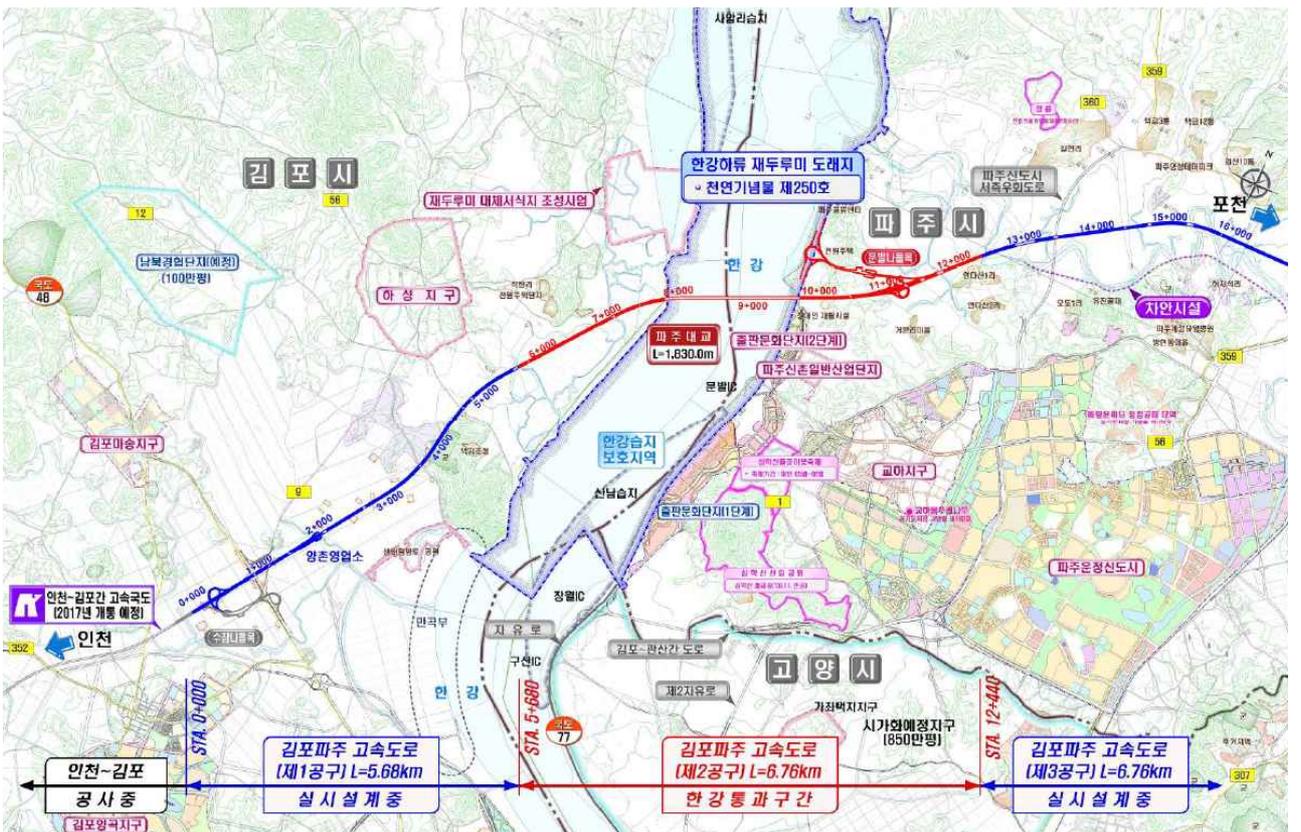
-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파주대교 교량건설에 대하여 현지 방문 검토를 실시함

- 교량건설 예정지 일대의 한강 하류는 지난 수십년 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자연스럽게 갯벌과 습지가 형성·보존되어 재두루미를 비롯한 각종 희귀 철새들이 도래·서식하고 있음
- 특히 재두루미는 서식지로 넓은 농경지와 방해받지 않는 갯벌을 선호하는 습성이 있음
- 이러한 지역에 교량의 건설은 재두루미를 비롯한 많은 희귀 철새들의 서식지인 농경지·갯벌 습지를 분단시켜 서식지를 축소시키고 물의 흐름 변화에 따른 갯벌 및 초습지 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철새들의 서식교란과 거대한 인공시설물에 의한 철새들의 서식 위협 등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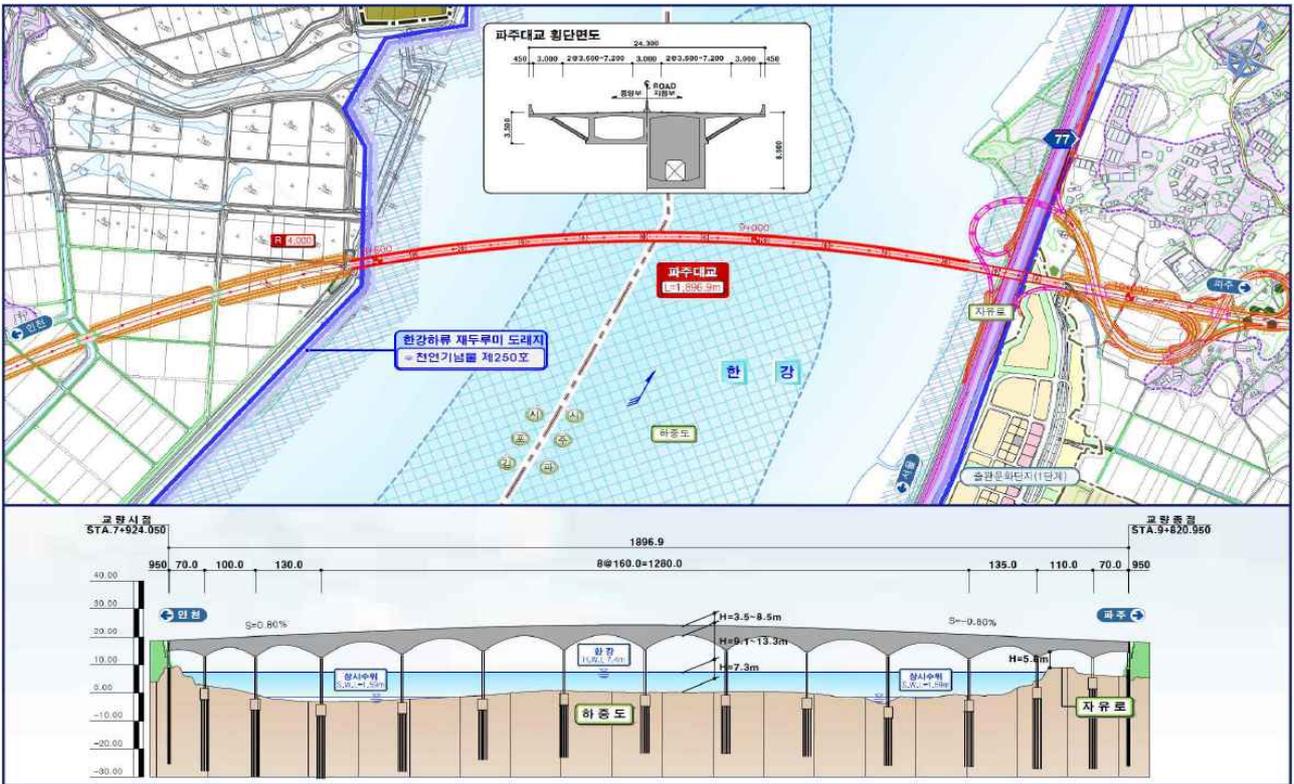
바. 의결사항

- 부결
 - 신청지역은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일대로 사업시행이 재두루미를 비롯한 희귀 철새의 도래와 서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문화재구역을 우회하거나 지하로 건설할 것을 권고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부결 7명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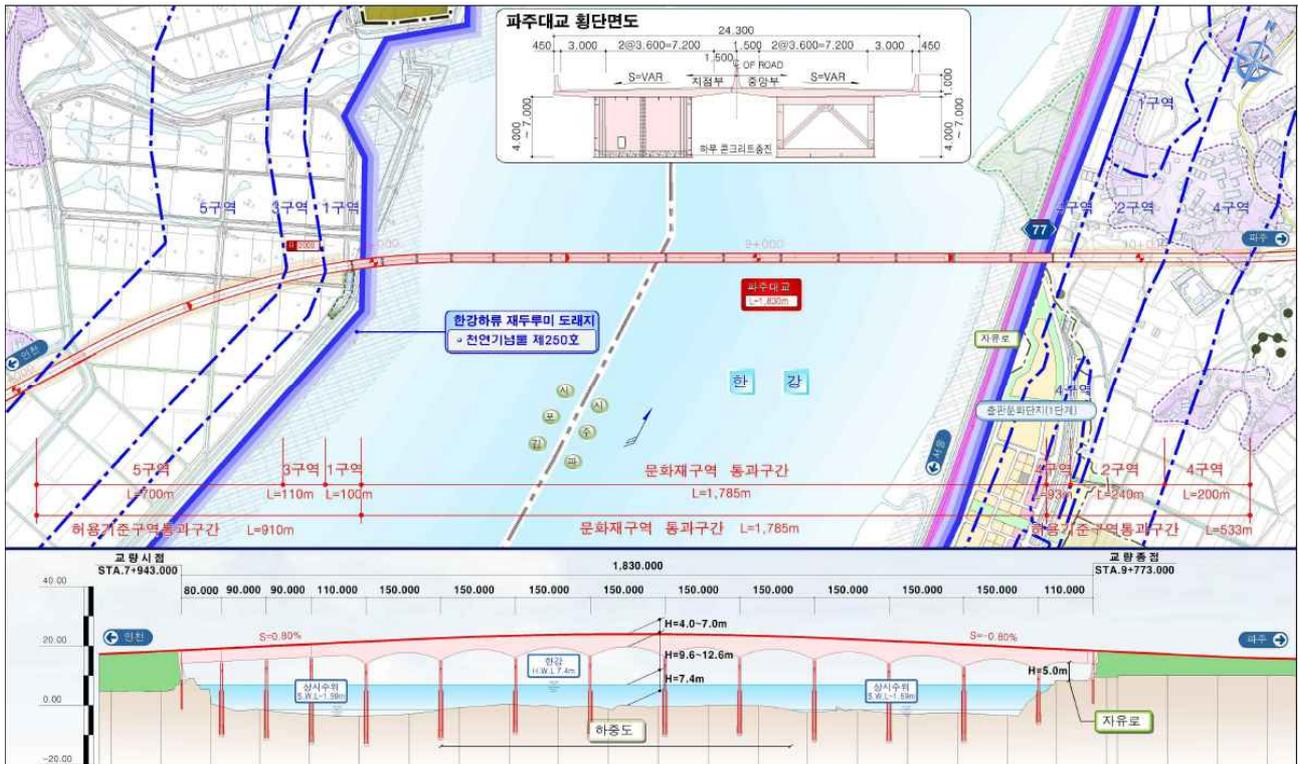
○ 금회 신청



○ 2차 신청(2016년 6월 신청)



○ 최초 신청(2013년)



3.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3인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일부, 김포시 한강변의 총적퇴적 지역
 - 지정일 : 1975.2.2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다가구주택 신축
 -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송촌동 647-5
 - 사업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다가구주택 신축
 - 연면적 : 820.43㎡ / 건축면적 : 289.93㎡ / 높이 : 16.65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8.5.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250m 이격(허용기준 2구역)
 - * 허용기준 2구역 : 평슬라브 14m, 경사지붕 18m 이하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

음식점)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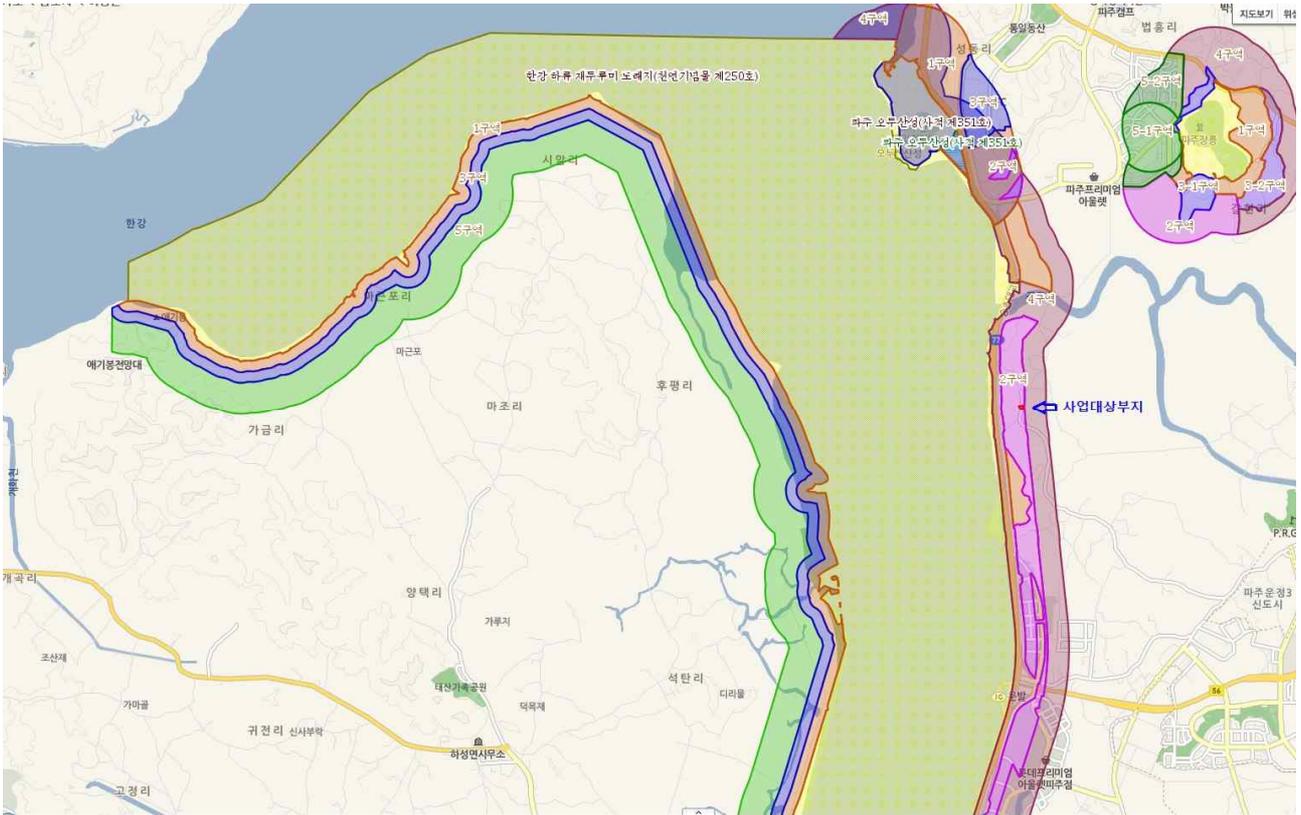
-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허용기준 2구역의 마을에 허용기준 높이 14m를 초과한 16.65m(4층) 높이로 일반음식점 및 다가구주택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임
- 신청 부지가 인근의 건물 부지보다 높고, 건물 높이도 높아 마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한강변의 습지와 공릉천 주변의 농경지 사이를 이동 비행하는 재두루미를 비롯한 각종 철새들에게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신청된 높이의 건물 신축은 한강변 습지와 공릉천 주변의 농경지 사이를 이동 비행하는 조류에게 위협요인이 되는 등 서식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부결 7명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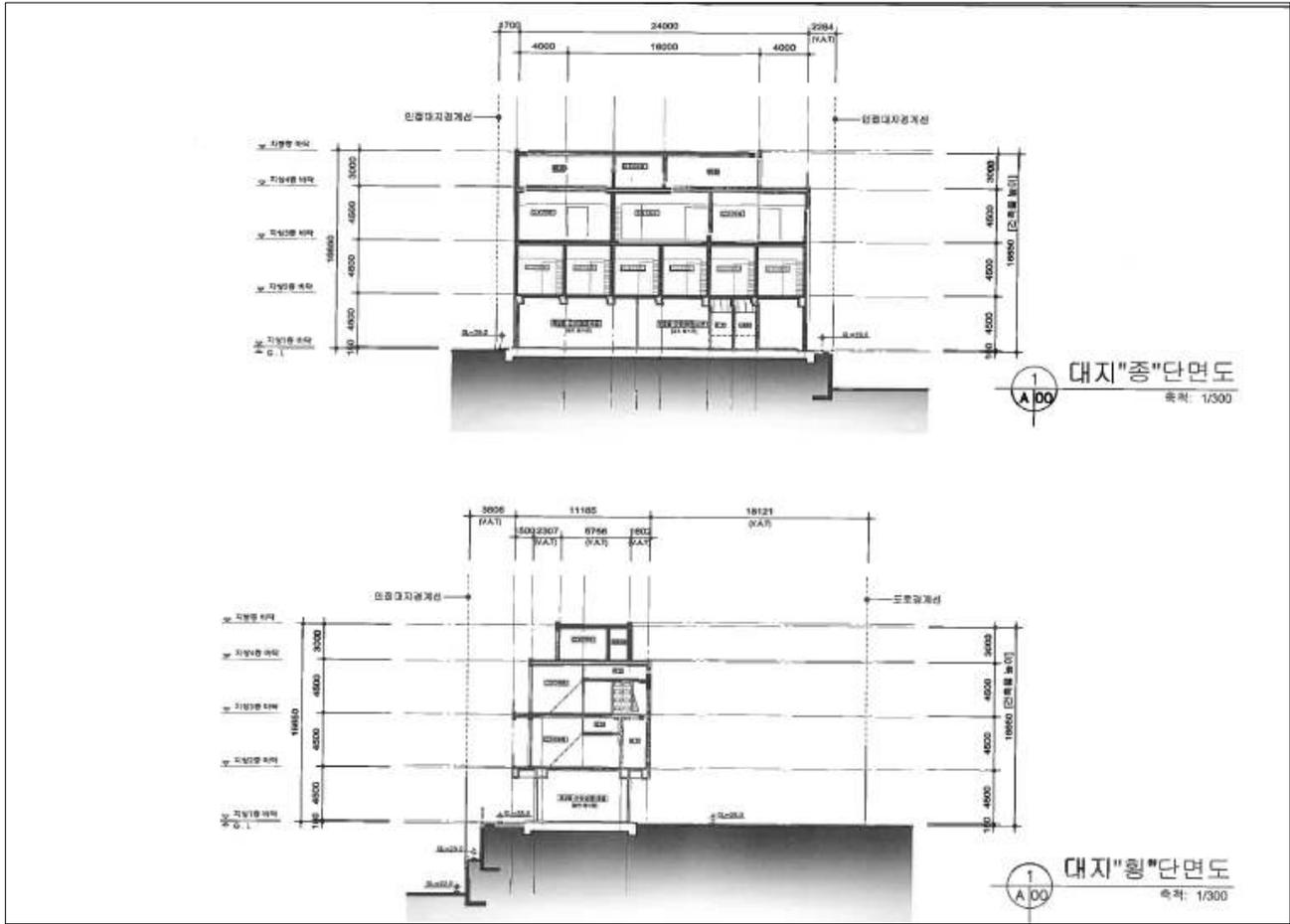
□ 사업대상부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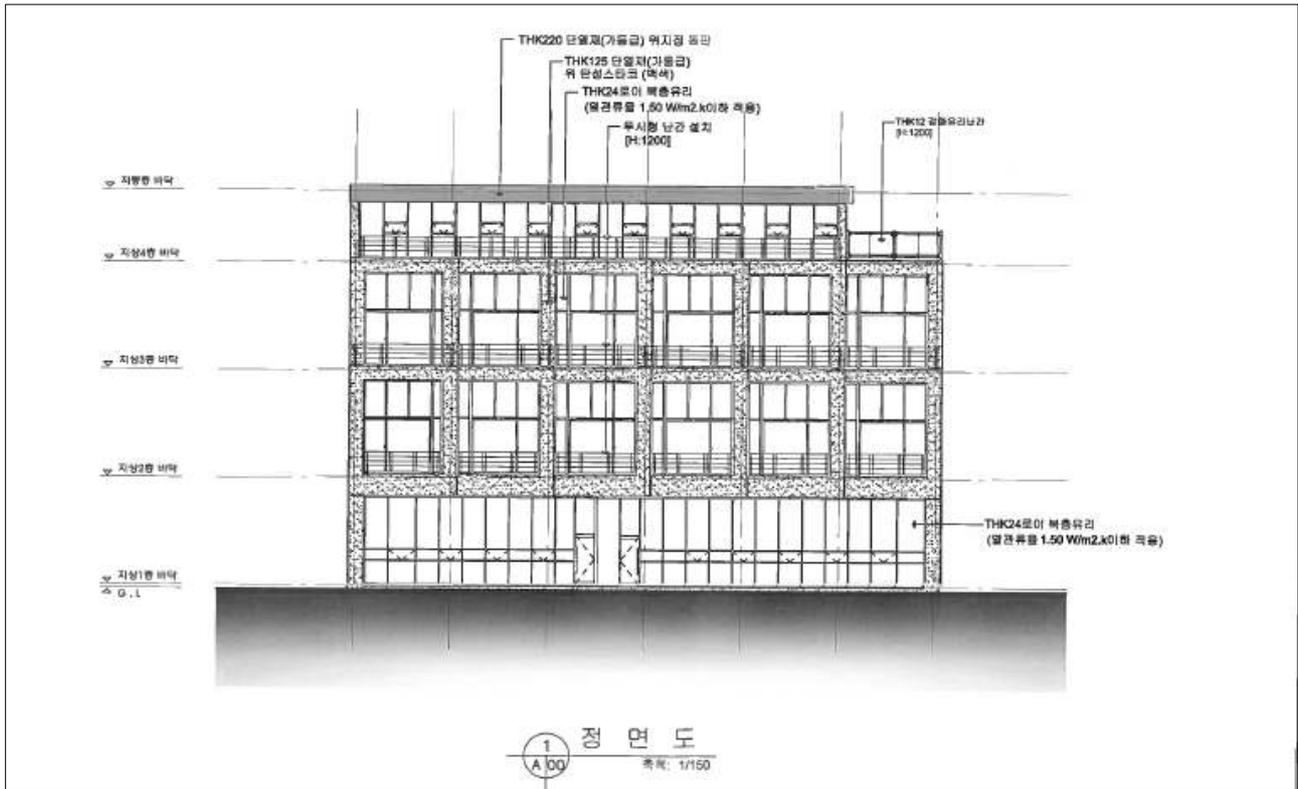
□ 사업대상부지 위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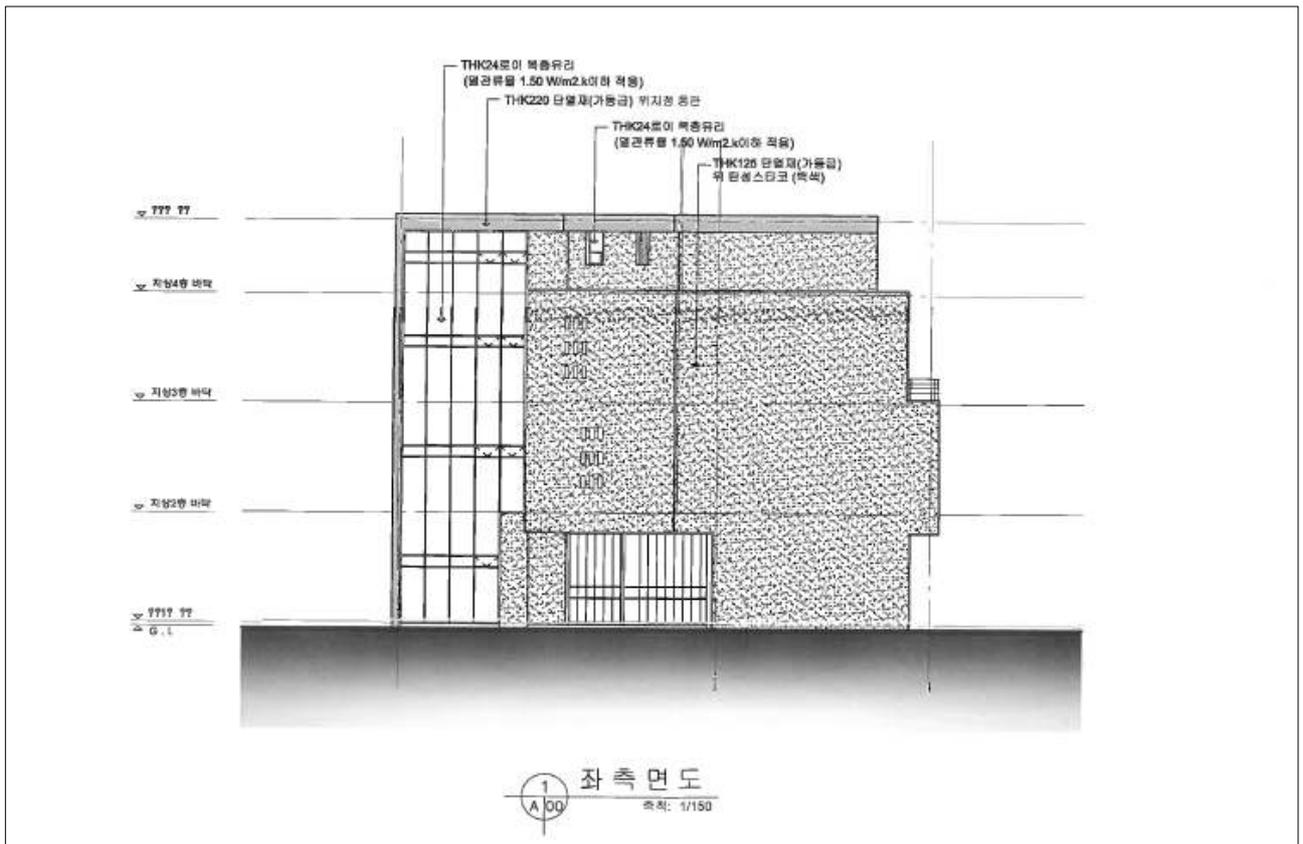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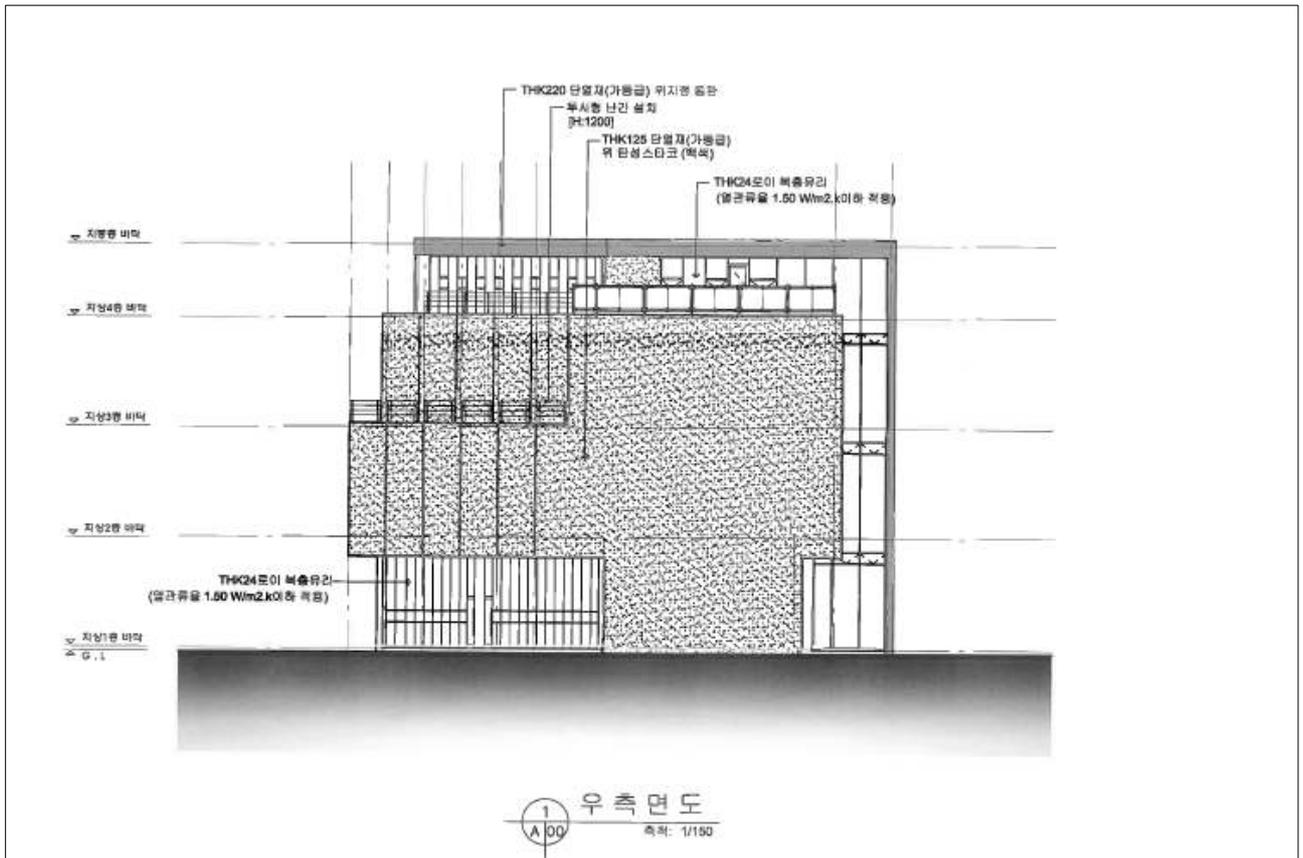
□ 신축건물 단면도



□ 정면도



□ 측면도



4.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내 해상유어장 설치

가. 제안사항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내 해상 유어장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내 해상 유어장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2016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7.27.)에서 '유어장 설치 및 운영은 아비류의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사유로 부결된 것으로, 금회에 유어장 운영기간을 조정(4월~11월까지 8개월만 운영)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연안 일원
 - 지정일 : 1970.10.3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해상 유어장 설치
 - 사업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갈곶리 산 28번지 인근 해상
 - 사업내용 : 해상 유어장 설치
 - 유어장 좌대 (12m×24m×3m) 3개소 10m 간격으로 설치
 - 각 좌대 중앙에 휴게 시설물(흰색 천막) 설치
 - 유어장 해양 점용면적 2,244㎡(직접면적 864㎡, 간접면적 1,380㎡)
 - 유어장 운영기간 : 4월~11월 *아비도래지 2차 모니터링('17.9월~'18.5월)결과 추후 반영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2017.5.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아비 도래지 지정구역내 유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 당초 1년 내내 운영할 예정이었던 유어장을 아비 주서식 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제외한 4월~11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이 아비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4.1.)

- 거제 도창포 마을 어촌계에서 관광사업을 통한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해상유어장(유료 낚시터)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유어장은 해안으로부터 55m이격된 해상에 12×24m 3개를 10m 간격으로 직렬로 배치하고 각각의 상부에 6×8×3m의 흰색 천막을 설치하는 내용임
- 본 건은 16년도에 1회 부결된 바 있으며, 금회 아비 도래시기를 제외한 4월~11월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신청되었음
- 사업예정지역 앞쪽 해상은 겨울철 아비류가 무리지어 먹이(어류)를 따라 이동하며 먹이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흰색의 천막과 탐방객의 활동은 겨울철 아비류의 서식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천막의 색은 녹색~청색 계열로 교체하고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016년 제7차 위원회 시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7.15.)

- 도창포 마을 어촌계에서 관광사업을 통한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해상유어장(유료 낚시터)을 설치하는 사업임.
- 유어장은 해안으로부터 55m이격된 해상에 12×24m 3개를 10m 간격으로 직렬로 배치하고 각각의 상부에 6×8×3m의 흰색 천막을 설치하는 내용임.
- 사업예정지역 앞쪽 해상은 겨울철 아비류가 무리지어 먹이(어류)를 따라 이동하며 먹이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흰색의 천막과 탐방객의 활동은 겨울철 아비류의 서식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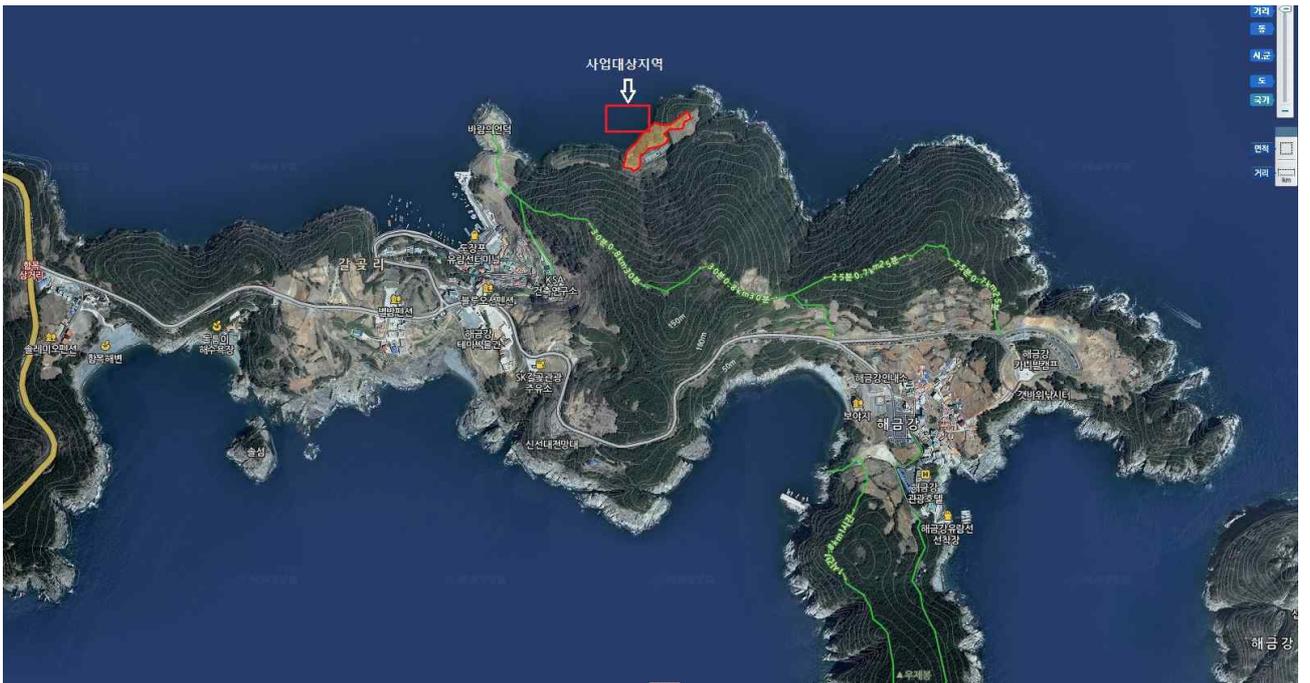
- 조건부 가결
 - 겨울철 아비류의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하여 천막의 색은 녹색 또는 청색 계열로 교체하고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로 한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조건부 가결 7명

※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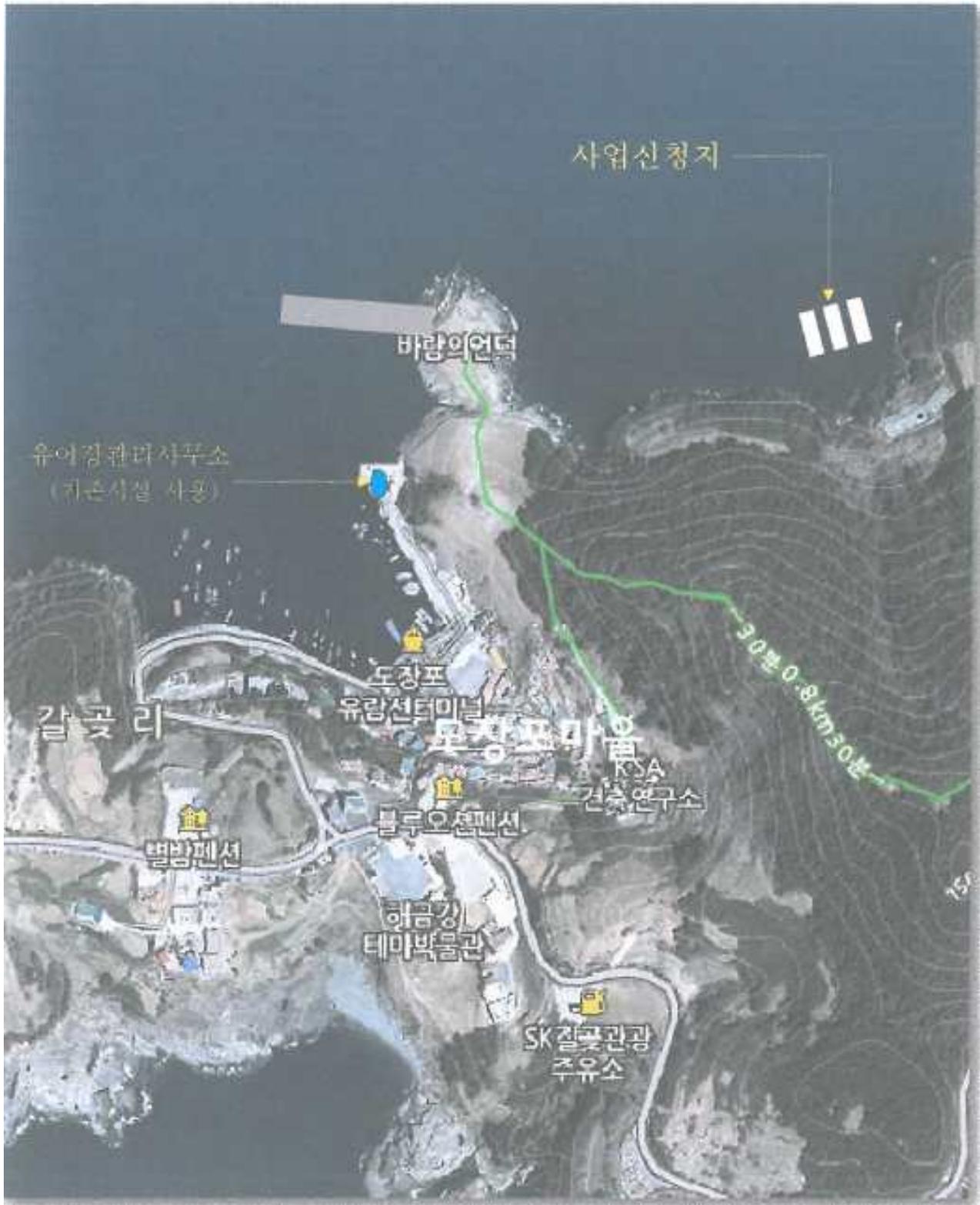
□ 사업대상지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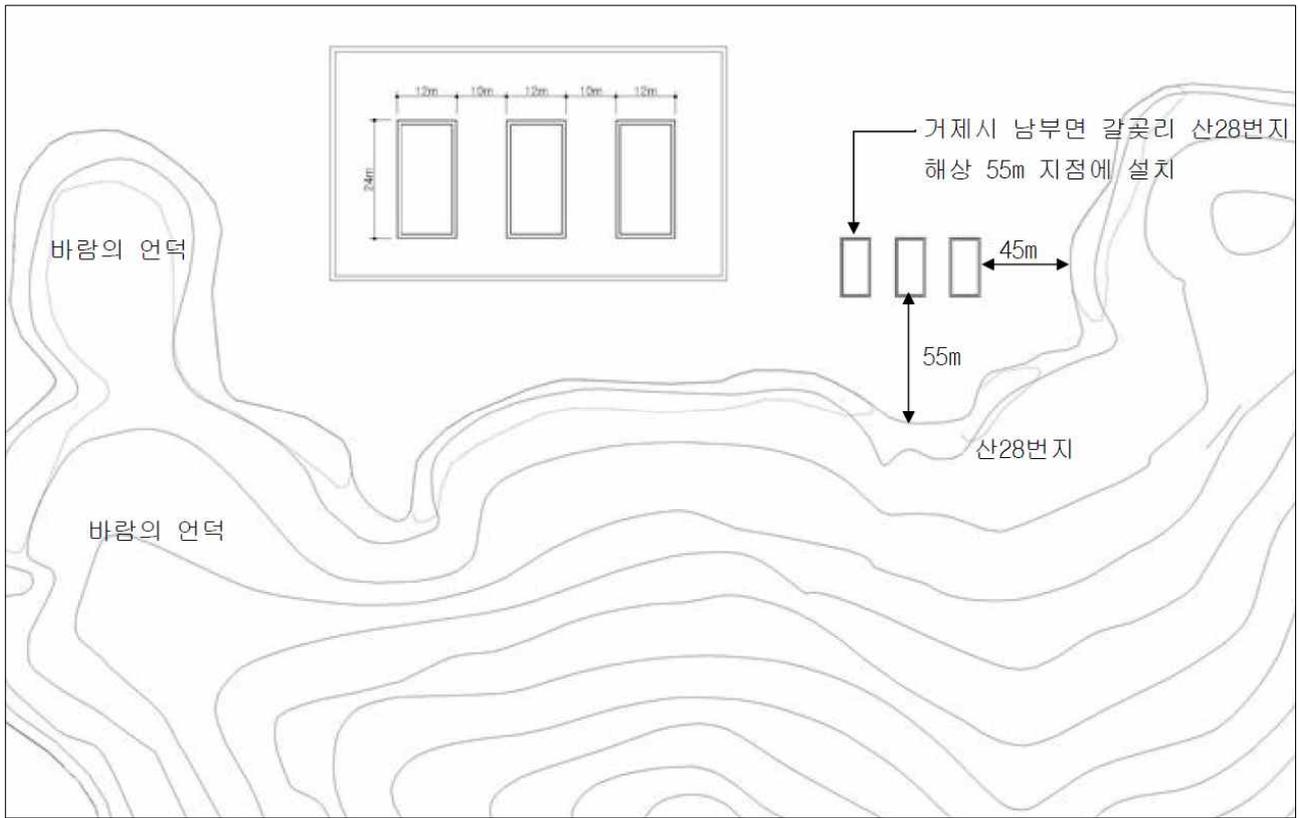
□ 사업대상지역 위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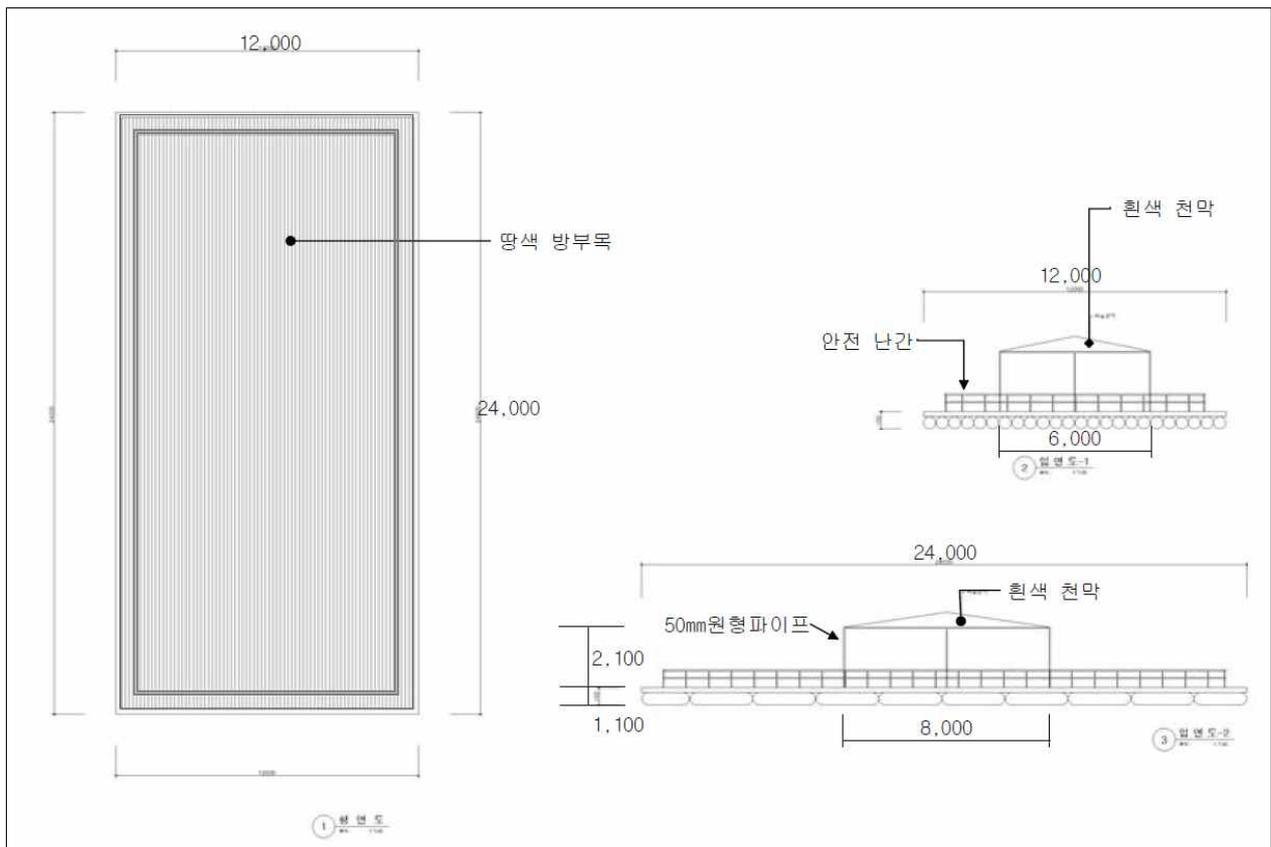
□ 주변현황



□ 유어장 해상배치도



□ 유어장 좌대 상세 도면



□ 신청지 전경



※ 참고자료(사업계획서)

현상 변경 계획서

1. 변경 목적

계획 대상지는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도장포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해안시대』 중심지인 거제시에 『유어장』과 관련하여 2012년 3월을 기준으로 국립공원지역 내에서도 365일 유어장 및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도장포어촌계에서는 어촌계원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유어장 현상변경허가를 득하고자 함

2. 신청요지

- 1) 환경부고시 제2016-86호로 환경부 공원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며
- 2) 아비도래지에 대한 거제시 용역결과 및

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연안 3~4Km내에는 아비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해상유어장 설치가 아비 서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상유어장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운영기간 단축 등의 제한 없이 연간 운영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 3) 만약 거제시의 용역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시행하는 2차 용역 결과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해상유어장 운영기간을 아비 주서식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을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수 있는 조건부 해상유어장 현상변경 허가를 요청합니다.

3. 시설계획

- 해양유어장은 PE제품으로 계획하며, 유어장 진·출입은 도장포어촌체험마을 전용선을 이용토록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계획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기능적으로 편리하게 계획하며 탐방객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고려하여 계획

주요 시설 계획

구분	해양점용면적(m ²)	비고
유어장	2,244m ²	직접면적 : 864m ² 간접면적 : 1,380m ²

4. 사업계획

- 1) 사업명 : 도장포 유어장시설 조성사업
- 2) 위 치 :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28번지 앞 지선
- 3) 점용면적 : 총 면 적 - 2,244㎡
직접면적 - 864㎡
간접면적 - 1,380㎡
- 4) 용 도 : 유어장
- 5) 사업시행자
주소 : 경남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로 100
성명 : 도장포어촌계
- 6) 시설의 종류와 규모

유어장시설(24m×12m×3m - 3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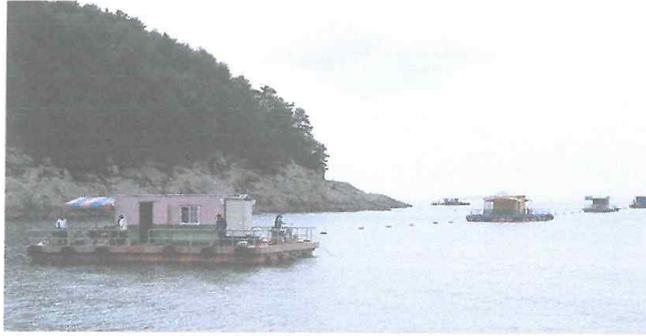
- 7) 시설물 주재료 :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 8) 사업기간 : 2017년 5월 1일 - 5월 31일
- 9) 사 업 비 : 약 4억5천만원

5. 관리운영계획

- 1) 환경위생관리
 - 유어장의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및 청결이 중요하므로 세심한 계획
 - 유어장에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며 유어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관리선을 이용하여 매일 수거
- 2) 시설관리
 - 자원 및 시설의 보호관리체계를 강화
 - 비성수기시 시설관리의 철저와 성수기를 대비한 파손시설 등의 보수를 통하여 각 시설물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토록 함
- 3) 안전관리
 - 타 유어장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숙박과 취사시설을 없애고 순수한 낚시 등의 여가활동만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안전문제와 환경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설계획
 - 유어장시설 이용 시 의무적으로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며 관리 철저
 - 안전요원이 상주하여 이용객의 안전에 최선
 - 각종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순찰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및 비상구급체계 완비
 - 유어장의 난간을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 시설물의 주기적 점검과 지도강화를 도모

6. 지자체별 유어장 사례

가. 거제시 유어장 사례



거제시 탐포유어장

나. 타 시,군 유어장 사례



전남 강진 서중유어장



경남 통영 사랑유어장

5.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신례리)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지정일 : 1966.10.12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692-9번지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1,210.00m²
 - 건축면적/연면적 : 168.61m²/199.49m²
 - 건폐율/용적률 : 13.93m²/16.49m²
 - 건물최고높이 : 8.99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도로조성 : 잔디블럭 포장 도로 103m(폭 4m)
 - 성토 물량 : 1,776.00m³
 - 석축 2단 쌓기 : 총 139m(4m 석축(1단) 67m + 3m 석축(2단) 72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05.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연접(2, 3구역)

- * 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 * 3구역 : 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

-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 산림전용 허용, 기타 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라. 검토의견(*****)

- 해당 신청지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바로 연접지역에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한 건으로 건축 예정지가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을 위해 상당한 성토가 발생하고, 성토면을 보강하기 위해 7m 높이(2단)의 석축을 쌓아야 한다는 점 등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4.19)

- 금회 단독주택 신청지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류 문화재구역과 연접된 곳으로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은 해당 신청지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
- 해당 부지 내 단독주택 신축은 건축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적 사면에 상당량의 성토 및 인공적인 보강 석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 위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연접된 지역에 다량의 성토와 높이 7m(4m+3m), 길이 약 70m의 석축이 쌓여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부결 7명

6.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하례리)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주변 연접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지정일 : 1966.10.12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244-2외 3필지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총 6동)
 - 대지면적 : 5,522.00m²
 - 건축면적/연면적 : 717.12m²(1동당 118.64m²)/710.64m²
 - 건폐율/용적률 : 12.99m²/12.87m²
 - 건물최고높이 : 6.4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07.30.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연접(2, 3구역)
 - * 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 * 3구역 : 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

- 농·임업에 한해 1,000m² 이하 산림전용 허용, 기타 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라. 검토의견(*****)

- 사업 신청지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연접한 지역에 동일 구조 및 규모의 단독주택(1동당 건축면적 118.64m², 최고높이 6.4m(1층)) 총 6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건으로 건축물 중 문화재구역과 가장 가까운 동은 약 3m 이격되어 있으며 총 6개동의 주택이 신축되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4.19)

- 금회 신청지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바로 연접 지역인 2구역(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축, 재축 허용) 및 3구역(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에 총 6개동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된 건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은 2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규모나 위치 상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바로 연접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연접하여 6개동의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부결 7명

7.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인도교 설치

가. 제안사항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인도교 설치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인도교 설치공사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 소재지 :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 25번지 외
 - 지정일 : 1966. 6. 15.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강원도 삼척시 대이리 동굴지대 내 인도교 설치공사
 - 사업위치 : 강원도 삼척시 대이리 224번지
 - 사업내용 : 인도교 설치공사
 - H-BEAM교 설치(B=1.2m, L=13.8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 6. 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문화재구역 내 영농활동을 위한 인도교 개설 사업으로 문화재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7. 4. 16)

- 이 지역은 많은 석회동굴이 발달하는 특성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지대로, 현재 알려진 동굴 이외에도 다수의 석회동굴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정구역에 발달하는 소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 교량은 규모가 크지 않은 소형으로 대규모 굴착이나 훼손이 수반되는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계획된 지점의 상·하류 약 150m 지점에 각각 2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다.
- 교량의 설치 목적이 하천 피안에 있는 규모가 크지 않은 밭 1필지의 경작을 위한 것으로 신청되어 있다. 따라서 이 농지의 경작을 위하여 교량을 설치하는 것은 교량 설치로 얻게 되는 이득보다 미확인 동굴의 훼손 가능성과 천연기념물의 경관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상, 하류 인접 지역에 이용 가능한 교량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이 교량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이해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2017. 3. 24)

- 사업예정지 일대는 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중에서 주변 경관이 가장 우수한 지역에 해당되며, 계곡의 하천인 무릉천 북쪽의 하안은 도로 개설로 원지형이 없어졌으나 남쪽 하안은 대부분 원지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임.
- 또한 사업예정지는 천연기념물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지정구역 내부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는 중요민속문화재 삼척 대이리 너와집(제221호)과 삼척 대이리 통방아(제222호) 및 삼척 대이리 굴피집(제223호)이 있어, 이 지역은 가능한 원지형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됨.
- 영농활동을 위한 인도교 개설사업이라고 하였으나, 인도교 종점일대의 토지 이용도나 현장 사진 등의 자료가 부족하여 인도교의 활용도나 당위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인도교 개설 예정지 서쪽 약 140m 떨어진 교량(교량1)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바. 의결사항

○ 부결

- 삼척 대이리 동굴 문화재구역 내 인도교 설치는 미확인 동굴의 훼손 가능성과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부결 7명

8.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단독주택(3동)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단독주택 3동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7-1번지 외
 - 지정일 : 1962. 12. 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공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64번지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3개동)

구분	사업내용
이정아	건축면적 86.72㎡, 연면적 84.92㎡, 최고높이 6.4m(경사지붕)
이진배	건축면적 86.72㎡, 연면적 84.92㎡, 최고높이 6.4m(경사지붕)
이정의	건축면적 86.72㎡, 연면적 84.92㎡, 최고높이 6.4m(경사지붕)
합계	건축면적 : 260.2㎡, 연면적 254.8㎡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 3. 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50m 이격(2구역)

- 허용기준 2구역 :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평스라브 8m 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단, 현지방선에서 1m 초과 기초 터파기 공사 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단독주택 3동을 신축하는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한 동굴 보존·관리에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 4. 5)

- 신청지역은 세계적으로 학술적,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역으로 지정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완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정확한 위치는 김녕굴 및 용천동굴과 인접한 위치이고 동굴과는 약 180m, 지정구역과는 약 50m 이격되어 있음. 신청지역의 주변은 밭농사를 하고 있는 경작지이거나 주변의 건물의 거의 없어서 자연환경이 유지되는 지역임.
- 신청지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구역이지만 1구역이 없이 세계자연유산지역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핵심지역과 인접해 있음. 세계자연유산 등재시 IUCN의 5개 항목의 권고사항 중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완충지역에서 지하환경을 훼손시키는 지상의 농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조치를 수행한다』 라고 지시하고 있음.
- 이 지역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터파기는 동굴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건축물로부터 나오는 오폐수는 정화가 되더라도 동굴 내에 침투하여 동굴생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신청구역의 주변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지역에 건축물이 세워진다면 주변 완충구역 내에 다수의 건축물이 세워질 우려가 있어서 동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결론적으로 세계자연유산 지역의 완충구역으로서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의한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청구역 내의 공사는 허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2017. 4. 17)

- 신청지역은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해당하며, 천연기념물 인접지역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형식은 단독주택이나 실제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설정한 최소한의 허용기준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고자한 경우라 생각할 수 있다.
- 사업지역이 천연기념물인 용암동굴에 인접하고 있어 인공구조물의 설치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지반의 굴착 등은 동굴의 낙반이나 함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오폐수는 지하수를 오염시켜 동굴을 훼손 오염 시킬 수 있다. 신청의 건은 다수의 집단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건으로 다량의 오폐수 발생이 예견되고, 이의 처리 방법이 자연침투 형식이므로 오폐수의 지하 동굴로의 이동으로 천연기념물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바. 의결사항

- 부결
 - 사업대상지는 문화재 구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단독주택(3동) 신축은 동굴 보존·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부결 7명

9.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7-1번지 외
 - 지정일 : 1962. 12. 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 사업위치 :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산 41-69번지
 - 사업내용 : 휴게음식점, 다가구주택(6가구)
 - 구조 : 1개동 2층(건물높이 9.4m, 경사지붕)
 - 건축면적 172.62㎡, 연면적 279.57㎡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 12. 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70m 이격(2구역)
 - * 허용기준 2구역 :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평스라브 8m 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단, 현지방선에서 1m 초과 기초 터파기 공사 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휴게음식점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동굴 보존·관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 4. 5)

- 신청지역은 세계적으로 학술적,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은 세계자연유산 지역으로 지정된 거문오름용암동굴계로서 이 중에서 만장굴 2입구와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완충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임.
- 신청지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이지만 1구역이 없이 세계자연유산지역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핵심지역과 인접해 있음. 세계자연유산 등재시 IUCN의 5개 항목의 권고사항 중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완충지역에서 지하환경을 훼손시키는 지상의 농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조치를 수행한다』 라고 지시하고 있음.
- 만장굴이 분포하는 지역의 주변은 산림으로 우거진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없는 상태임.
- 세계자연유산 지역의 완충구역 내 허가에 의해 향후 개발행위 압력이 높아져서 수없이 많은 건축행위가 진행될 것임.
 - 경관을 해칠 우려가 높음.
 - 진동에 의한 영향성이 높아질 수 있음(누적지수).
 - 공개구간 내 진동에 의한 영향으로 낙석으로 위험을 가지고 있음.
 - 침투조 및 오수처리시설물에 의한 영향성 검토
 - 지표수와 지하수 오염에 의한 동굴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만장굴 2입구와 약 160m, 지정구역과는 약 70m 이격되어 있음.
 - 2입구 공개구간 내 진동에 의한 영향으로 낙석의 위험을 가지고 있음.
 - 만장굴 안전진단 사업'(제주특별자치도, 2015) 보고서의 내용에서 안전성에 대한 언급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2017. 3. 27)

-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해당하며, 천연기념물 인접지역에 근린생활시설과 다

가구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 사업지역이 천연기념물인 용암동굴에 인접하고 있어 인공구조물의 설치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지반의 굴착 등은 동굴의 낙반이나 함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오폐수는 지하수를 오염시켜 동굴을 훼손 오염시킬 수 있다. 신청의 건은 다세대 주택을 건립하고 일부는 상업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것으로 다량의 오폐수 발생이 예견되고, 이의 처리 방법이 자연침투 형식이므로 오폐수의 지하 동굴로의 이동으로 천연기념물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바. 의결사항

- 부결
 - 사업대상지는 문화재 구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2층 규모의 건물 신축은 동굴 보존·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부결 7명

10. 「용천동굴」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용천동굴」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용천동굴」 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66호 「제주 용천동굴」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387-2번지
 - 지정일 : 2006. 2. 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공사
 - 사업위치 :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306-1번지
 - 사업내용 : 휴게음식점 신축
 - 건축면적 237.75㎡, 연면적 237.75㎡, 최고높이 4.6m(경사지붕)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 12. 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m 이격(2구역)
 - * 허용기준 2구역 :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평스라브 8m 이하, 경사지붕 12m이하), 단, 현지방선에서 1m 초과 기초 터파기 공사 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제주 용천동굴」 주변 휴게음식점을 신축하는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한 동굴 보존·관리에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 4. 5)

- 신청지역은 세계적으로 학술적,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은 세계자연유산 지역으로 지정된 거문오름용암동굴계로서 이중에서 용천동굴과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완충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임. 동굴과는 약 180m, 지정구역과는 약 30m 이격되어 있음. 신청지역의 주변은 밭농사를 하고 있는 경작지로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없는 상태임.
- 신청지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이지만 1구역이 없이 세계자연유산지역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핵심지역과 인접해 있음. 세계자연유산 등재시 IUCN의 5개 항목의 권고사항 중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완충지역에서 지하환경을 훼손시키는 지상의 농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조치를 수행한다』라고 지시하고 있음.
- 이 지역에는 생활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자체정화조에 의해 오폐수를 정화해야함. 이는 이 지역으로부터 산출되는 오폐수가 용천동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동굴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공사 중 발생하는 진동을 동굴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원칙적으로 세계자연유산 완충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을 신설하는 어떠한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현상변경 기준안이 새로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2017. 3. 31)

- 용천동굴은 국내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하에 발달하는 용암동굴이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용암동굴에 근접한 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건으로 건축 규모는 크지 않다.
- 다만 동굴의 근거리에서 암반 굴착이 계획되어 있어 동굴의 함몰이나 낙반을 초래할 수 있는 지반 진동이 우려되어 진동 방지 대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 건물의 용도가 휴게음식점이므로 다량의 오폐수 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의 처리 방법이 자체침투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하수 영향을 주어 근접한 천연기념물 동굴로 유입되면서 세계자연유산의 보존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 사업대상지는 문화재 구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건물 신축은 동굴 보존·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부결 7명

11.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내 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내 화장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내 화장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2017년 제3차 천연기념물과(‘17.3.22)에서 '문화재 보존 및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결된 사항으로 화장실 위치를 변경하여 부의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1호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 소재지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5길 65 (덕명리)
 - 지정일 : 1999.9.14.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화장실 신축
 - 사업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313-3
 - 사업내용 : 화장실 신축
 - 기초공사 : 콘크리트포장 99.4㎡, 배수설비 95m
 - 화장실 설치 : 5.6m×2.7m×2.9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9.30.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화장실 신축 위치가 문화재구역내로 문화재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2017. 4. 18)

-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탐방객을 위한 화장실 설치 건이다.
-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치 위치는 민가에 근접하고 있는 나지이므로 추가로 굴착을 하거나 하여 화석산지를 훼손할 가능성은 없고, 탐방객들의 차량 등이 주차하는 공터에 인접하여 있어 화장실의 설치는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외부 도색 등이 문화재 경관과 이질적이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본다.

(*** 前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2017. 4. 18)

- 상기 사업은 덕명리 화석산지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당초 신청지가 이 지역의 경관과 화석산지의 관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간이화장실의 설치 지점을 변경하여 신청한 건임
- 변경된 설치 시점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에 인접해 있는 나대지로서, 이 지역의 경관과 화석산지의 관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간이화장실 설계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화장실 전면의 현무암 판석은 이 지역 화석층의 지질과 부조화를 이루는 석질임으로, 이 지역 지질유산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석재로 검토할 것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신축 화장실의 색상 및 디자인이 문화재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조건부 가결 7명

12.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주변 라온 프라이빗타운(3차부지)조성 공사

가. 제안사항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인근 라온 프라이빗타운 조성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본 사업은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주변 라온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현상변경 신청한 건으로, 2009. 10.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허가기간이 만료 되어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재신청
- 소천굴 추가지정('15.11.) 및 문화재지정구역 확대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추진 중인 지역으로,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실시하고 현상변경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36호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번지 외
 - 지정일 : 1971.10. 4.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라온 프라이빗타운(3차부지)조성 공사
 - 사업위치 :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산 18번지
 - 사업내용 : 클라이밍장, 4계절썰매장, 카트장 설치
 - 실내 클라이밍장 : 연면적 1,024㎡, 건축면적 1,055㎡, 높이 9.75, 평지붕
 - 4계절 썰매장 : 9m×17m×14.9m / 카트장 : 1k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9.30.까지

※ 라온프라이빗 관련 문화재 현상변경 개요

- '09.10 현상변경 허가(1-3단계사업 / 허가기간: 2009.5 ~ 2014.6)
 - * 3단계사업 : 온천스파, 차이니즈레스토랑
- '11,'12년 1,2단계 사업준공 (운영중)

- '17.2 현상변경 허가신청

- * 기 허가기간 만료 및 소천굴 지정구역 확대에 따라 3단계부지에 대해 내용을 변경해 신청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380m 이격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제주 한림동굴지대 소천굴」 인근 클라이밍장, 4계절 썰매장 및 카트장을 조성하는 공사하는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한 동굴 보존·관리에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7. 3. 14)

- 천연기념물 한림 용암동굴지대 중 소천굴의 연장부가 확인되면서 지정구역이 확대되어 사업지역이 영향검토 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기존 현상변경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건으로, 신청 내용은 기존허가 내용을 변경하여 카트장과 클라이밍,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사업부지는 새로 발견된 소천굴의 연장부 경계로부터 대략 300m 이상 이격된 지역으로, 대규모 암반 굴착이 수반되지 않는 공사는 천연기념물의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만 신청 내용과 현지 확인 결과 규모는 크지 않으나 약간의 암반 제거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공사로 인한 암반 충격이 소천굴과 인접한 황금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더불어 건설 후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오폐수가 지하로 유입되어 인접 천연

기념물로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차수 시공이 요구된다.

- 따라서 암반 제거와 굴착공사 전 과정을 전문가 입회하에 수행하고, 공사 종료후 전문가 입회 결과 보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 前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7. 3. 14)**

- 사업예정지는 소천굴 천연기념물 추가지정 최하류 지역의 경계선에서 약 385~613m 거리에 위치함(문화재청 문화재보존관리지도 기준)(그림 1).
- 소천굴은 하류쪽으로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그림 2).
- 소천굴의 천연기념물 추가 확대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설정과 현상변경 허가기준 마련이 시급함(그림 1).
- 소천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추가등재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음.
- 추가로 제출된 보완서 및 물리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소천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기한 문제점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 3. 14)**

- 사업은 진행하여도 무방하지만 아래의 확인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함.
 - 소천굴 관련하여 새롭게 발견된 지점과는 약 300m 이격되어 있음.
 - 지하 약 5m 규모(설계변경이 되었으나 기존 신청서 상의 규모)의 저수조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진동에 대해서는 관련전문가의 자문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약 300m 거리라고 하면 영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암질과 균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받을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건축물이 세워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물리탐사와 시추를 통한 동굴의 존재 유무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현장검토 시 사업부지 끝 지점(컨테이너와 장비가 있던 곳)의 함몰지에 대해서도 확인 검토가 필요함.
- 공사 중 동굴이 발견될 경우에 즉시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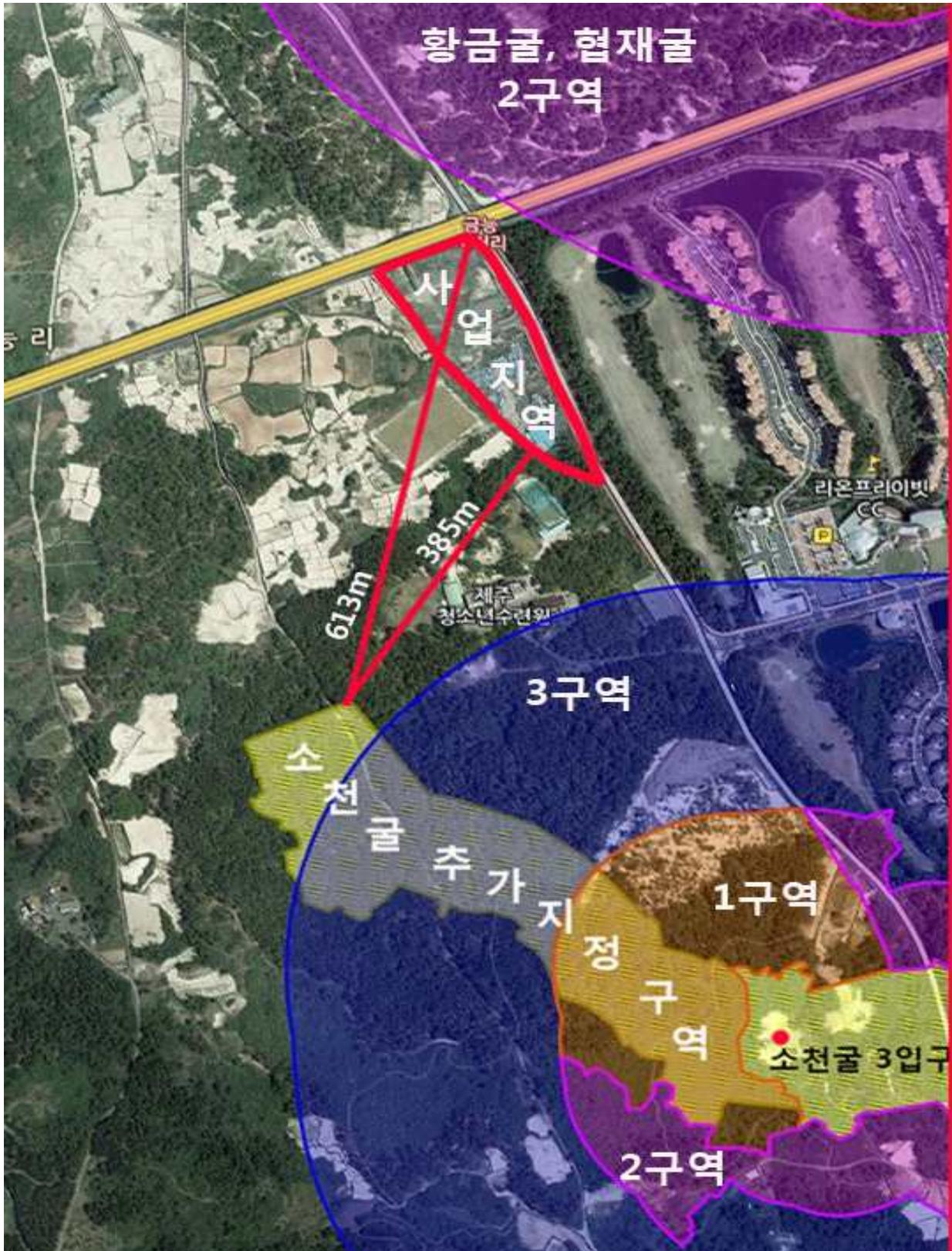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공사로 인한 지반 충격 등 주변 소천굴을 비롯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굴착공사 과정을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 종료 후 입회 결과보고서를 제주시 문화재 담당부서에 제출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조건부 가결 7명



(그림 1) 천연기념물 제주 한림 용암동굴 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와 사업지역과의 관계



(그림2) 소천굴의 연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굴분포도. A=소천굴 3입구 발견 이후 확인되어 추가 지정된 끝 부분. B=도로 개설시 발견된 동굴로 소천굴의 연장으로 추측됨. C=사업 예정지

13. 「보길도 윤선도 원림」 보호구역 내 보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축

가. 제안사항

「보길도 윤선도 원림」 보호구역 내 보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축을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길도 윤선도 원림」 보호구역 내 보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34호 「보길도 윤선도 원림」
 - 소재지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200 등
 - 지정일 : 2008. 1. 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보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축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202번지
 - 사업내용 : 병설유치원 1동 신축
 - 건축/연면적 273.42㎡, 높이 6.3m(1층), 경사지붕(한식기와)
 - 철근콘크리트조, 외벽 치장벽돌 마감
 - 학교 전체 건물 현황

구분	당초	변경	증설
대지면적	8,864	8,864	-
건축면적	1,125.75	1,399.17	273.42
연면적	1,648.50	1,921.92	273.42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 내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보길면 학부모의 유치원생 증원 요청에 따라 기존 병설유치원 교실 규모(1실)가 작아 증원된 수요인원에 맞게 병설유치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신축부지는 「보길도 운선도 원림」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학교 본관동 남측 후면에 위치하며 2016년 12월 학교 교직원 관사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철거한 곳이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임. 보길도 운선도 원림의 주요 문화재인 세연정에서 조망되지는 않지만 수평거리 90m 이내에 위치하므로 문화재 경관 및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4.14.)

- 신청 건축물은 한옥구조의 병설유치원으로 운선도 원림 관광정보센터(한옥)와 인접된 건물로서 별 문제 없는 건축물로 판단됨. 단, 본관동 후면의 관사 2동, 학교 입구 좌측에 있는 관사 1동 철거, 놀이터 위치 이전, 세연정과 학교 운동장 사이에 경계 숲을 조성하는 조건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 * 경계숲 조성 시 수목 선정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요청
- 다만, 병설유치원 신축방안으로 동측건물(영어체험학습관)을 1층에서 2층으로 개축하면 건폐율을 확대하지 않고 양호한 위치에 유치원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사업 시행 전 사전 검토하기를 바람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4.14.)

- 보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축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존에 관사, 화장실 등의 건물이 철거된 곳이다. 따라서 이곳은 기존의 조사에서 문화재 확인 되지 않았고, 현상이 이미 변경되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별도의 시·발굴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 다만, 해당 공사 중에 매장문화재가 확인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보완자료 제출 / 2017.4.7.)

- 보길초등학교 유치원교실 개축과 관련하여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향후 5년 이내 학급 증설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시설 부족으로 인한 학교시설 증축 계획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길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생수용계획은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학교 및 유치원 운영 현황 >

구분	학급운영현황
보길초등학교	학년별 1학급운영 (총6학급, 학생 87명)
보길유치원	만4~5세 혼합반 (총1학급, 20명)

< 향 후 5년간 학교 및 유치원 변동추이 >

연 도 별	취원률적용 보길초 병설유치원				보길초등학교													
	만3 세	만4 세	만5 세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학 급	학 생												
2017		7	11	18	1	13	1	15	1	11	1	13	1	19	1	16	6	87
2018		4	16	20	1	20	1	12	1	14	1	10	1	12	1	17	6	85
2019	1	5	16	22	1	26	1	19	1	11	1	13	1	9	1	11	6	89
2020	1	7	9	17	1	13	1	24	1	17	1	11	1	13	1	10	6	88
2021	1	3	13	17	1	20	1	12	1	23	1	16	1	10	1	12	6	93

바.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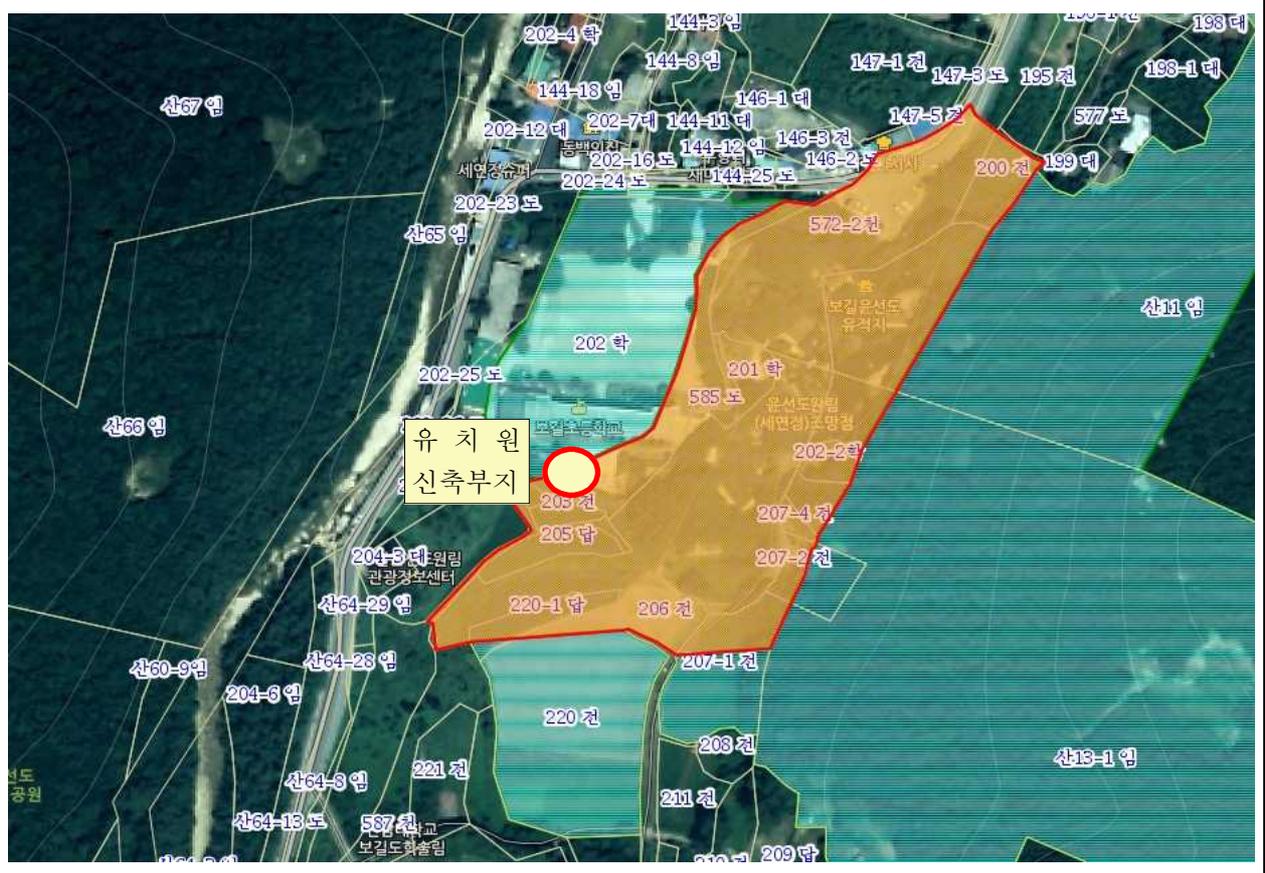
○ 보류

- 병설유치원 신축방안은 영어체험학습관 개축(1층에서 2층으로)검토 후 재심의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보류 7명

보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축 위치도



14. 「진도 고니류 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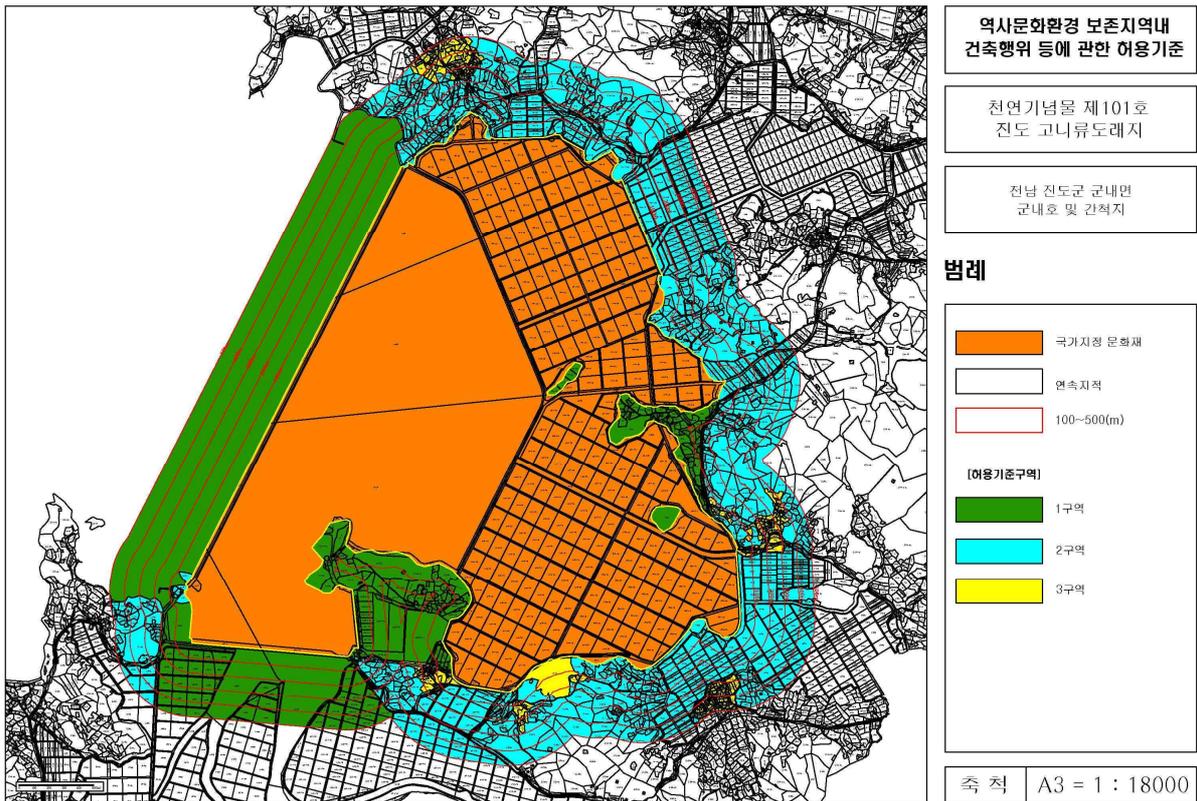
- 「2017년도 천연기념물·명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99호, 2016.4.29.)」의 시행에 따라 「진도 고니류 도래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
 - 소재지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수류리 일원
 - 지정일 : 1962.12.3.
- (3) 신청내용 : 「진도 고니류 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 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진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 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검토의견 (***)**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4.12.)

- 진도 고니류도래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2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부락을 4개소를 3구역으로 구역조정하고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임
- 문화재 주변 500m 내(2구역)에 위치하는 자연부락 2개소는 이미 3구역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나머지 4개 부락을 3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고니류의 도래 및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공통사항이 추가되었으며, 그중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항목은 1·2구역의 경우 대부분 10m 이하의 평지에 해당하므로 2구역에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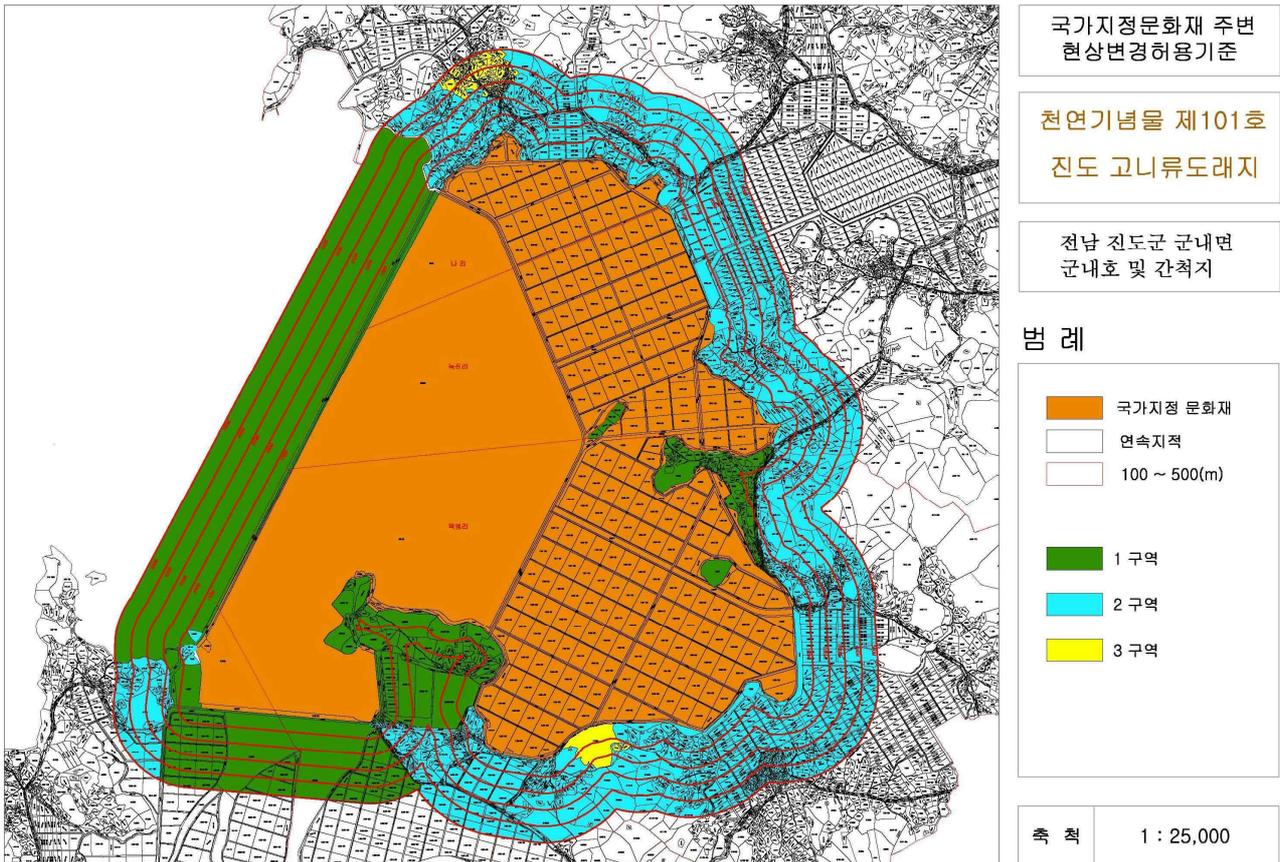
바. 허용기준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제3구역	○ 진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사. 참고자료(허용기준 기고시 현황)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제3구역	○ 진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아.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진도군의 신청안에서 절·성토와 관련된 사항은 제2구역에 적용하고 공통사항 등을 조정한 문화재청 조정안으로 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조건부 가결 7명

15.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안)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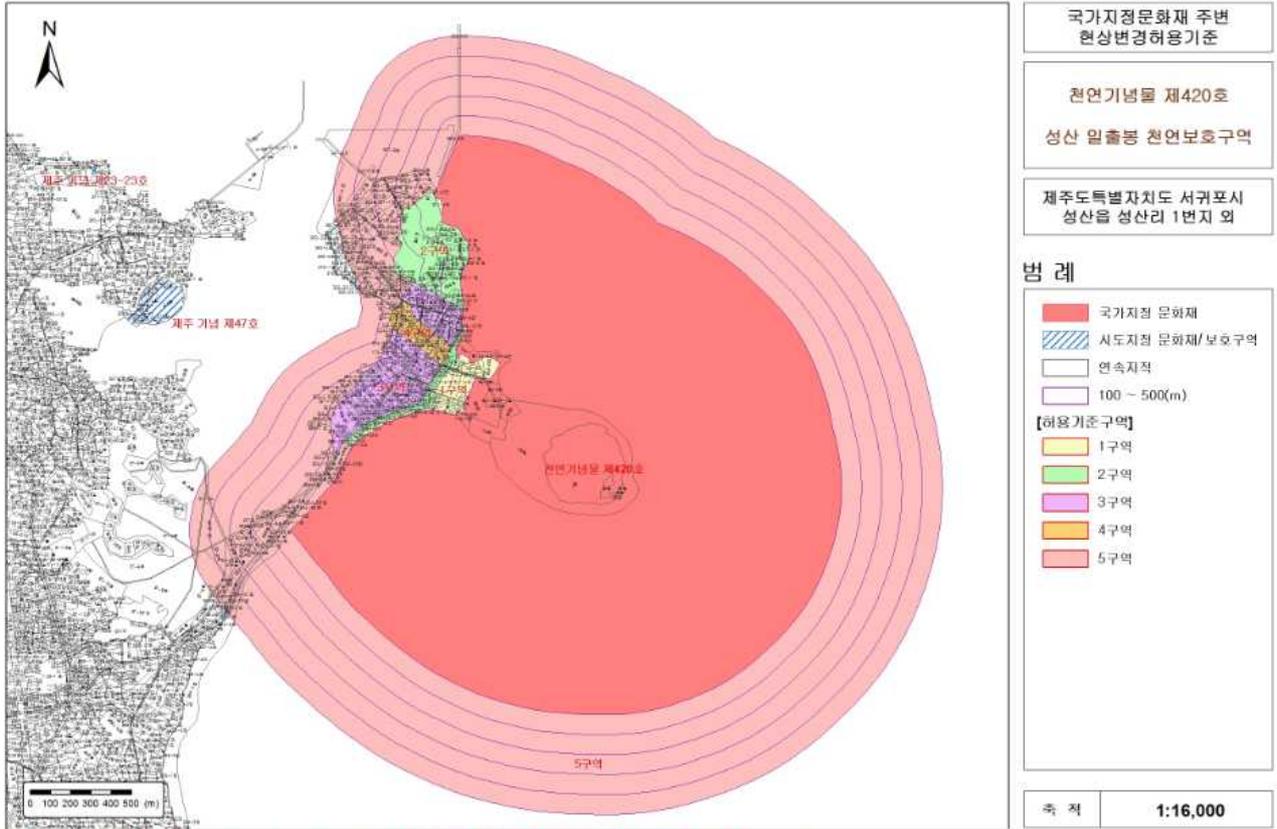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효율적 보호와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간 합리적 균형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15.03.31)
 - 허용기준상 평지붕 기준 삭제, 경사지붕 허용기준 적용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요청('16.12.23/서귀포시 → 문화재청)
 - 경사지붕 허용기준만 존재하여 1층 평지붕 건축 신청 시에도 현상변경 허가를 득 해야 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평지붕 허가기준 마련 건의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결과 제출('17.04.21/제주특별자치도 → 문화재청)
 - 주요 조정 내용 : 허용기준 상 평지붕 기준 마련
 - 공고기간 : 2017.03.20 ~ 04.11(20일간)
 - 의견수렴 결과 : 별도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번지 등
 - 지정일 : 2000. 7. 18
- (3) 신청내용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12m 이하	○ 건축물 16m 이하	
3구역	○ 건축물 16m 이하	○ 건축물 20m 이하	
4구역	○ 건축물 20m 이하	○ 건축물 24m 이하	
5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적용		
공통 사항	《1구역부터 4구역에 적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1구역부터 5구역에 적용》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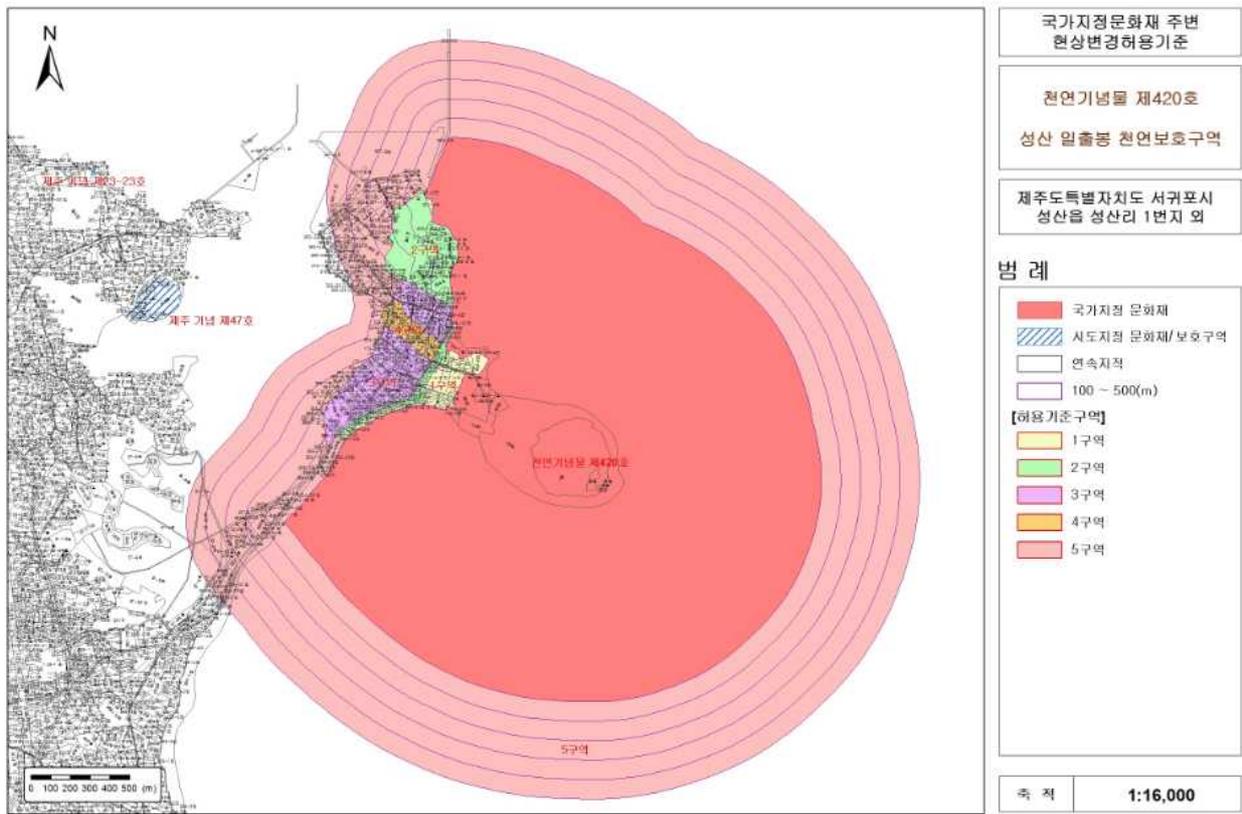
라. 검토의견(*****)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효율적 보호와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간 합리적 균형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2015.03.31. 고시)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6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5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 시 허용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바. 의결사항

○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가결 7명

16.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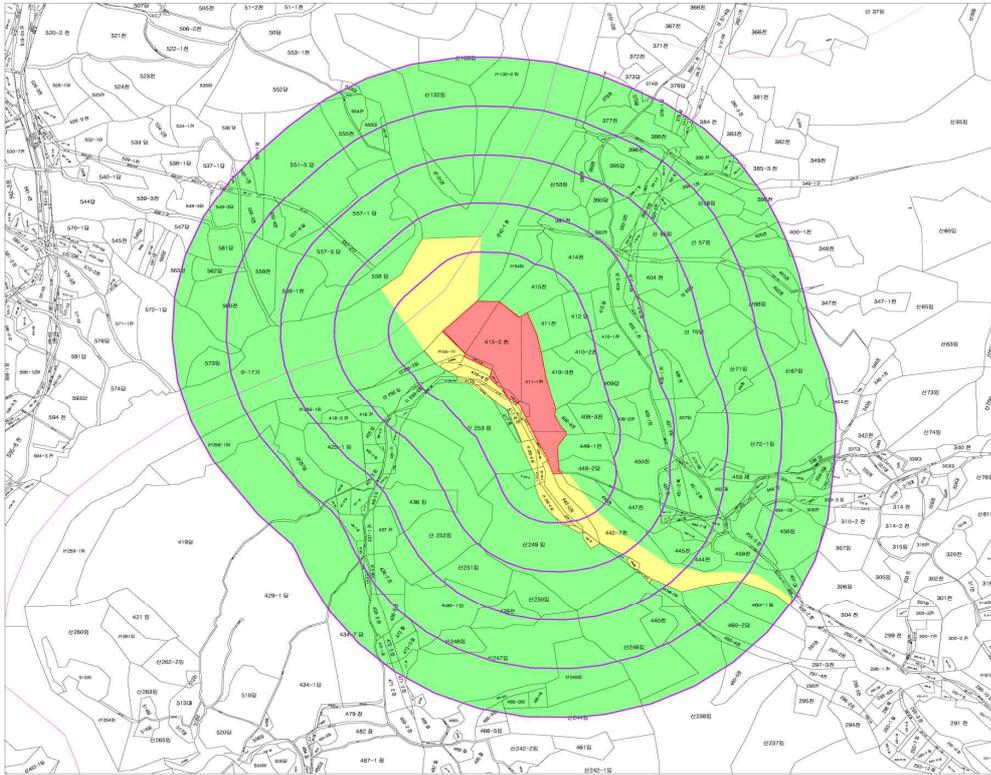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37호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42-1
 - 지정일 : 2012. 9. 25
- (3) 신청내용 :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문화재 보존, 관리, 관람 등을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함.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안)

천연기념물 제537호
비둘기낭 폭포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
415-2번지 일원

범례

- 국가지정문화재
- 연속지적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1구역
- 2구역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3:10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축척 1:6,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라. 검토의견(***)**

-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의 문화재지정구역의 서측으로 약 40~100m 정도 이격된 지역으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 및 지형의 영향으로 단절되어 해당지역은 산지법에 의한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법령에 따라 문화재경관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포천시에서 제출한 허용기준(안) 공통사항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정안 >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 4. 21)

- 변경하고자 하는 허용기준안 도로 위쪽 산지를 1구역에서 2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산지법 및 군사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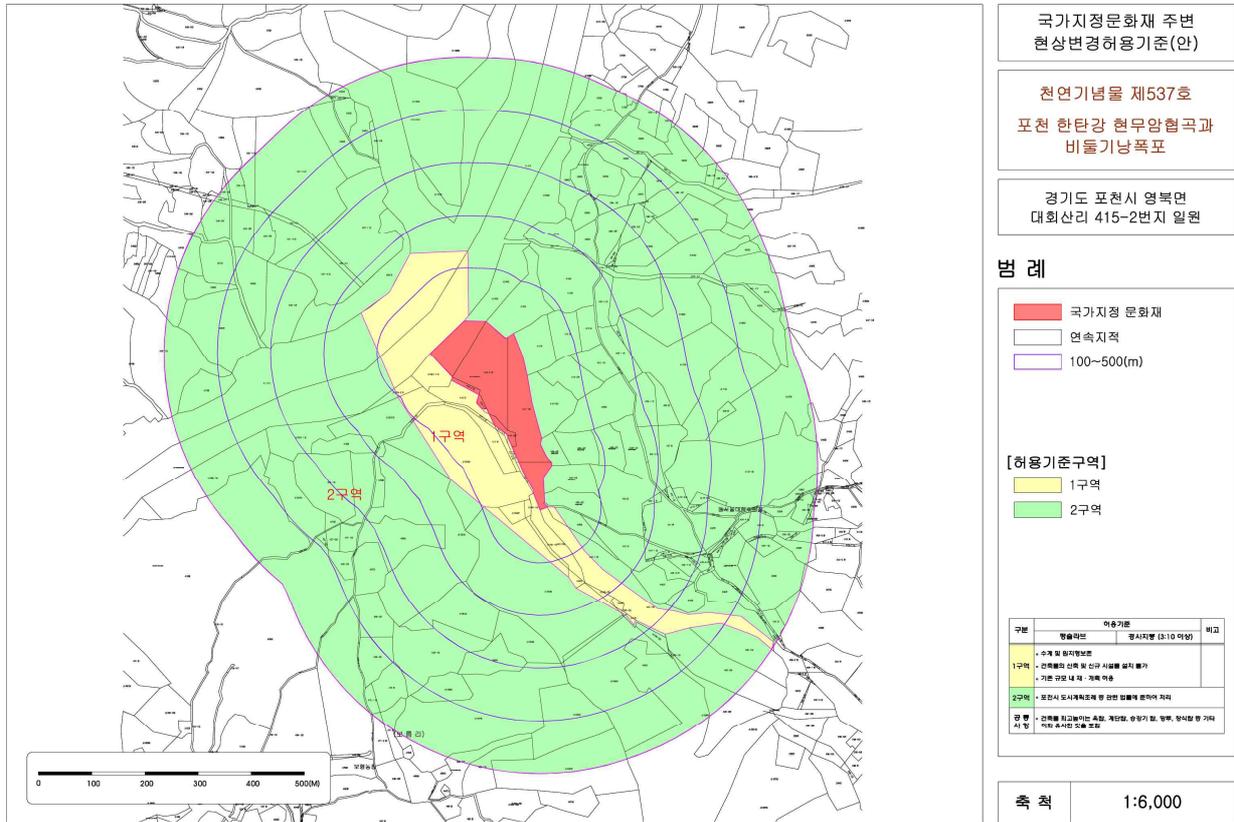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 4. 21)

-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지정구역 측면에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도로를 이격하여 급사면의 산지이므로 개발 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산지법에 의해 보존이 가능하고, 군사보호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규제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

바. 허용기준 기고시 현황

- 천연기념물 제537호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주변 허용기준(2013. 4.24. 고시)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수계 및 원지형 보존 ◦ 건축물의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 기존 규모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모두 포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포천시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문화재 보존, 관리, 관람 등을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함'을 공동사항에서 제외한 문화재청 조정안으로 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조건부 가결 7명

17. 「제주 방선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제주 방선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안) 마련을 위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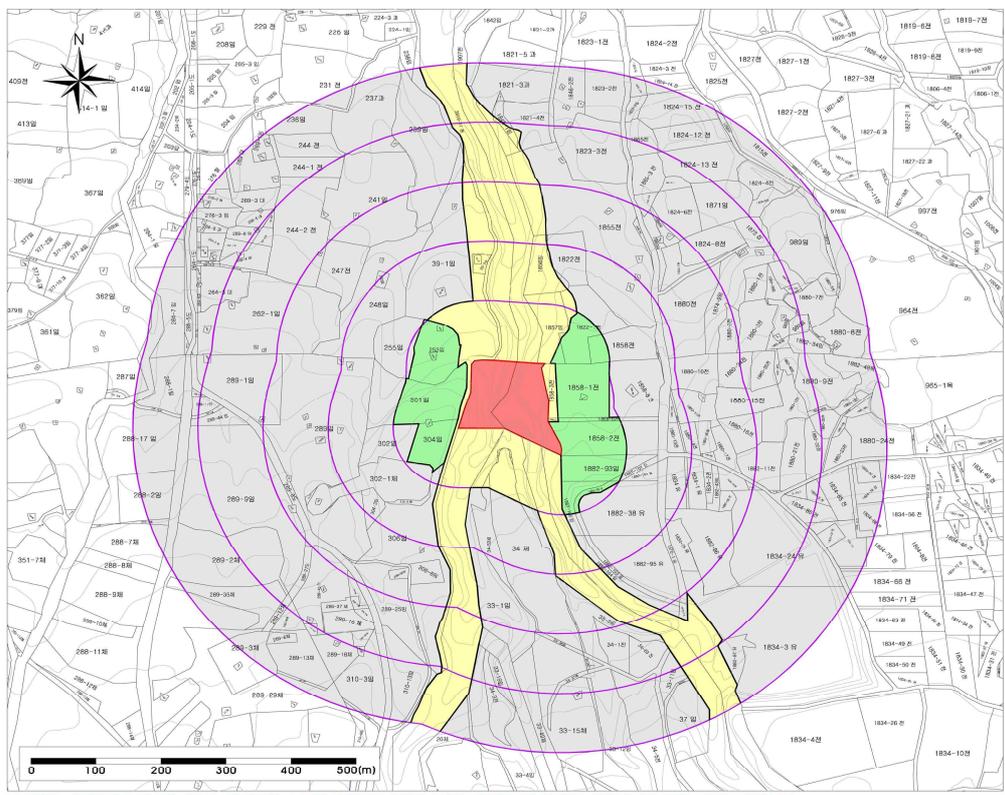
- 「제주 방선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92호 「제주 방선문」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907번지(오라2동 3819-11)
 - 지정일 : 2013. 1. 4.
- (3) 신청내용 : 「제주 방선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 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 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p>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명승 제92호
제주 방선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북새미길 48-26(오동중 1907)의

범 례

- 국가지정 문화재
- 인역지적
- 100 ~ 500(m)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0)이상
1구역	개방형
2구역	최고높이 5m이하
3구역	최고높이 7.5m이하

공통 사항

-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계획초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최고높이는 복합, 계단형, 승강기탑, 당부, 창세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 방화벽, 방화 칸막이, 방화문, 방화셔틀, 방화구획선, 방화수막대, 방화수막대설치, 도축장, 도제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방형
- * 소문 장외 벽을 포함 한지나 대가 오물물량 유출물량 방지 또는 양 방출을 위한 벽체도 포함함
- * 지면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방형
-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축척 1 : 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라.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신청한 허용기준(안) 중 공통사항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정이 필요함
- (당초)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 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변경)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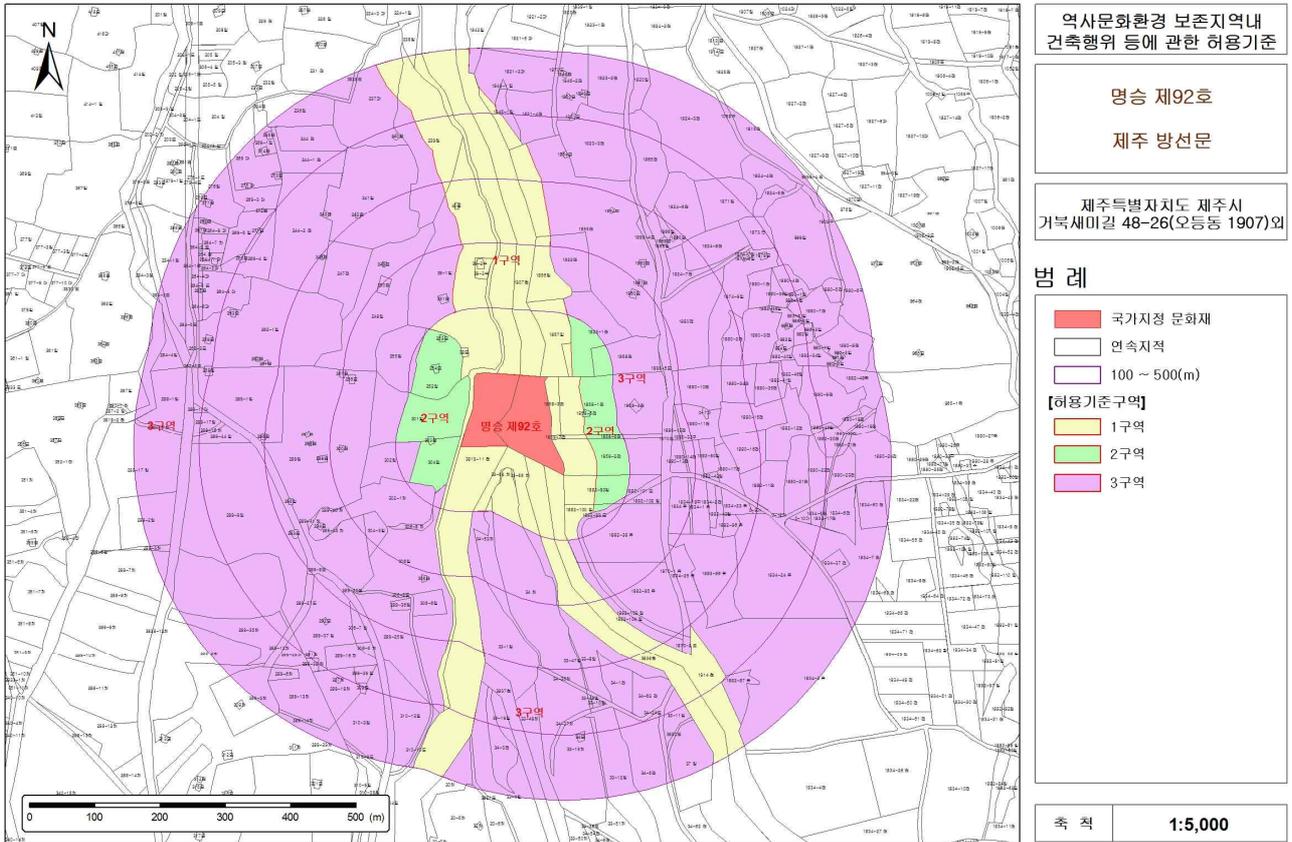
(사유) 하천 지역으로 지하 3m 이상 굴착 및 절토 시 수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명승 제92호 「제주 방선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마련을 위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방선문 북쪽 진입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측(하천 건너편) 50m 구간을 1구역으로 확대 조정하여 추후 건축행위로부터 진입공간의 경관 보존이 필요함

○ 또한 제주 방선문 지정구역의 동측은 전·답으로 향후 개발의 가능성이 높고 방선문 하천을 직접 조망할 수 있으므로 방선문 지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까지를 1구역(개별심의)으로 조정이 필요함

< 조 정 안 >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 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前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2.23.)

- 북쪽의 방선문 진입로 도로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50m까지 1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향후 문화재 진입경관을 보존하는데 필요함
- 지정구역 동쪽으로 2구역(제주특별자치도 제시안)에서는 지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까지 1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문화재 경관 보존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의견 / 2017.4.7.)

- 문화재 주변 하천은 현재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으로 타 법령에 의해 건축행위 등에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문화재 구역 진입로의 조망권 보호를 위해 진입로 인접 지역 등 최소한의 지역에 대해 1구역(개별심의)으로 설정하였음
- 또한 문화재의 왜소화를 방지하고 조망성과 일체성을 고려하여 100m이내는 2구역으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3구역(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으로 설정하여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사유재산권과의 조화를 고려하였음

(*** 외 32명 주민의견 / 2017.3.1.~2017.3.20.)

- 저는 「방선문」 인근 토지소유자로 다음을 이유로 결사반대함
- 제주 방선문은 한천에 위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법」, 「하천법」, 「절대보전지역」 등 이미 이중 삼중의 법규제로 보호되고 있는 바, 그 외의 추가 규제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 또 다시 방선문 외각 직경 500m 원형의 광범위한 보호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방선문 보호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을 침탈하겠다는 것으로 직권 남용, 불법행위임
- 따라서 동 현상변경(안)에는 결사반대하며, 진정 방선문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직경 100m 이내로 최소화 할 것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북쪽의 방선문 진입로 도로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50m까지 1구역으로 확장
 - 지정구역 동쪽으로 2구역(제주특별자치도 제시안)에서는 지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까지 1구역으로 조정
 - 공통사항 중 ‘지하층 절토는 제외’ 기준 삭제한 문화재청 조정안으로 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조건부 가결 7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7-04-18

18.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보호구역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 괴곡동 소재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의 국가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에 따른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하는 사항임
- 경 과
 - '16. 12. 21.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보호구역 추가 지정 요청 (대전광역시→문화재청)
 - '17. 3. 6.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17. 3. 10. 해당 느티나무 옆 통행로 차단 시 우회도로 개설 등 추진 방침 결정 알림(대전광역시 서구청→문화재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 소재지 : 대전 서구 괴곡동 985 등
 - 지정일 : 2013. 7. 17.
- (3) 신청내용
 - 12필지 4,687m²

소재지	기 지정(문화재구역)면적			보호구역 신청면적			변경 지정 면적(문화재구역, 보호구역)		
	필지	지적 (m ²)	지정면적 (m ²)	필지	지적 (m ²)	지정면적 (m ²)	필지	지적 (m ²)	지정면적 (m ²)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2	15,230	389	12	23,749	4,687	2	15,230	389
							(문화재구역)	12	23,749
							(보호구역)		

(4) 지정사유

- 마을 진입로가 느티나무로부터 2~3m 정도 이격되어 있어 나무뿌리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고, 느티나무 주변에 콘크리트 농막이 위치하고 있어 천연 기념물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따라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농막을 철거하고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

라. 검토의견(*****)

-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의 생육환경 개선 및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대학교 교수 현지조사 의견/2017.3.6)

- 괴곡동 느티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느티나무 주변 12필지 4,687㎡에 대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느티나무와 연접한 서·북쪽 도로(985번지)는 현재 마을 안쪽(506대, 417대 등)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 후 대체 진입로 신설로 생육공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폐쇄가 어려울 경우, 느티나무 남동쪽 포도나무밭(507전)일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바.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493-3	답	36	36	서구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보호구역
2	"	502-1	답	123	123	서구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
3	"	503	대	764	100	***	대전광역시 서구 ***	"
4	"	505-1	답	2,221	613	***	대전광역시 서구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5	"	505-2	임야	76	76	***	대전광역시 서구 ***	"
6	"	507	전	2,661	972	***,***,**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	"
7	"	962-1	전	1,020	1,020	***	대전광역시 서구 ***	"
8	"	962-2	전	1,020	1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	"
9	"	963-1	전	496	303	국(기획재 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
10	"	991	도로	102	102	국(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11	"	985	도로	1,302	276	국(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12	"	963	구거	13,928	963	국(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
합계				23,749	4,687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보호구역 지정 후 지번별 지정 구역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493-3	답	36	36	서구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 로 100(둔산동)	보호 구역
2	"	502-1	답	123	123	서구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 로 100(둔산동)	"
3	"	503	대	764	100	***	대전광역시 서구 ***	"
4	"	505-1	답	2,221	613	***	대전광역시 서구 ***	"
5	"	505-2	임야	76	76	***	대전광역시 서구 ***	"
6	"	507	전	2,661	972	***,***,** *,***	충청북도 옥천군 ***	"
7	"	962-1	전	1,020	1,020	***	대전광역시 서구 ***	"
8	"	962-2	전	1,020	1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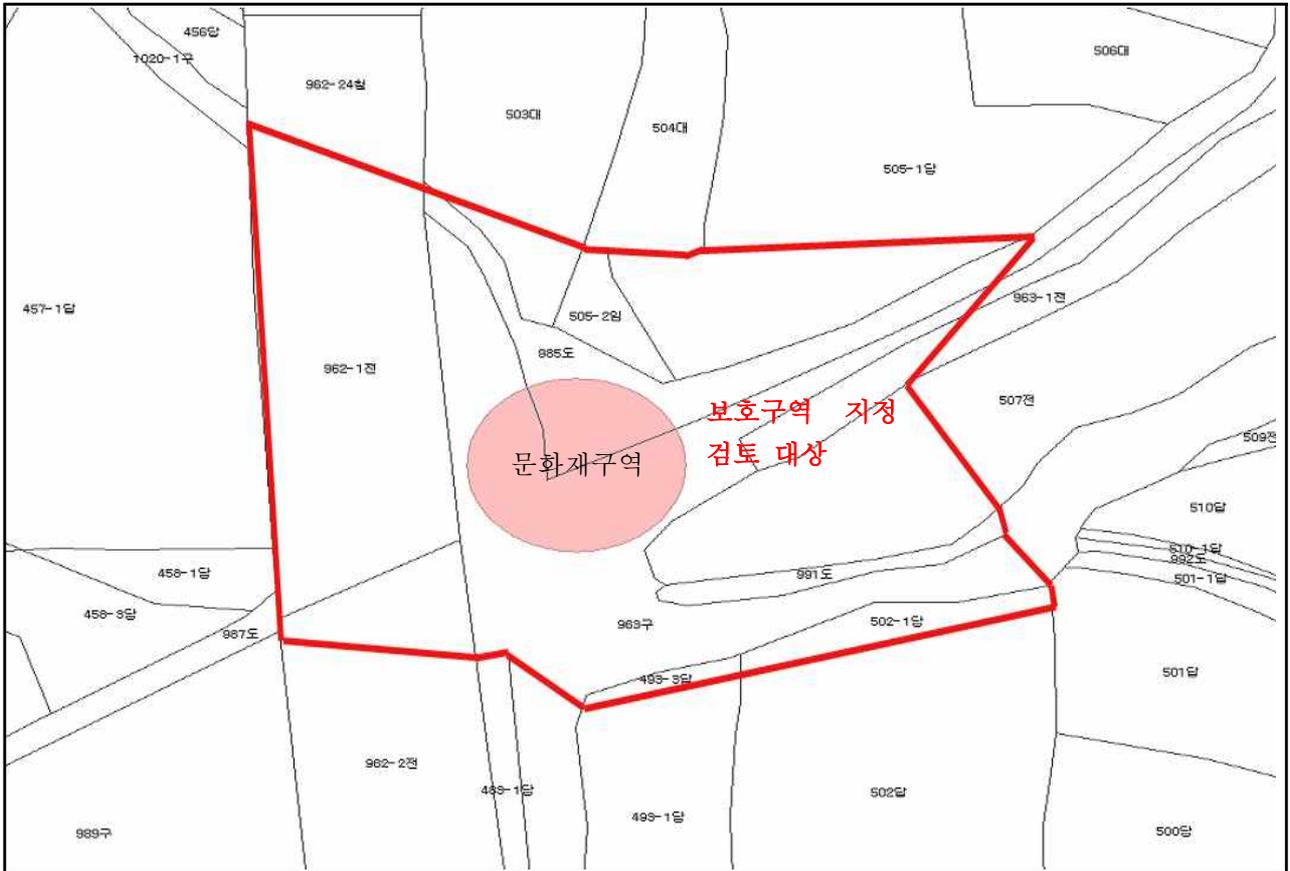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9	"	963-1	전	496	303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
10	"	991	도로	102	102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11	"	985	도로	1,302	118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문화재 구역
					276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보호 구역
12	"	963	구거	13,928	271	국(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문화재 구역
					963	국(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보호 구역
합계				23,749	5,076			

사. 의결사항

-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가결 7명

붙임 : 위치도 및 관련 사진

□ 보호구역 위치도



□ 관련 사진



19. 「통영 홍도 팽이갈매기 번식지」 공개제한지역 출입 및 촬영허가

가. 제안사항

「통영 홍도 팽이갈매기 번식지」 관련 TV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출입 및 촬영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통영 홍도 팽이갈매기 번식지」 관련 TV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출입 및 촬영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35호 「통영 홍도 팽이갈매기 번식지」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일원
 - 지정일 : 1982.11.16.
- (3) 출입 및 촬영 개요
 - 신청사유 : *** UHD 환경스페셜 <천연의 보물섬 홍도>(가제, 50분물) 촬영
 - 기획의도
 - 매년 2만마리가 번식하는 팽이갈매기의 천혜 서식지인 홍도에서 4월~8월말 경까지 팽이갈매기의 짝짓기·번식·이소 등의 생태 촬영을 통해 천연 홍도 생태의 디테일한 의의와 가치를 담는다
 - 방송(예정) : 2017년 하반기, (목) 밤 10시 *** 방영 예정
 - 구성 : 4K UHD 항공(드론) 및 지상촬영(수중촬영 포함)
 - 구성내용
 - 천혜의 비경 홍도-한려해상국립공원 최남단 보물섬 : 우리나라 최남동단의 무인등대섬 홍도 해식터널과 기암절벽의 절경을 4K 드론으로 소개
 - 홍도의 주인은 2만여 마리의 팽이갈매기
 - 세계 최대의 팽이갈매기 번식지
 - 팽이갈매기의 생태와 번식
 - 나그네새와 팽이갈매기
 - 수중생태의 보고 홍도

○ 촬영계획

- 흥도 입도 일정 : 4월말~8월경까지 5회, 매회 4~5일 체류
- 입도인 : 촬영스텝 1명, 카메라 2명, VJ 2명, 수중촬영 1명, 출연 전문가 1명 등이 회별로 3~5명이 입도
- 촬영장비 : UHD(4K) 촬영 카메라 또는 DSLR(소니 알파7, 캐논 5D Mark4 등), UHD(4K) 촬영 드론 인스파이어 2, 수중촬영 카메라 장비 (레드 하우징 등)

○ 체류방법

- 텐트로 숙박, 식사는 햇반 등과 건조 밑반찬을 이용 음식쓰레기 철저히 단속, 쓰레기봉투로 모든 쓰레기 회수 철저

○ 출입 및 촬영기간 : 2017. 4월하순~8월하순 * 기간 중 5회(1회당 4~5일)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UHD 화질로 갯벌이갈매기 번식지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고 자연유산으로서 조류 번식지의 홍보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갯벌이갈매기 번식지에 여러 회에 걸쳐 입도하여 체류하는 본 사업의 수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4.14.)

- *** 환경스페셜 제작팀이 프로그램(50분) 제작을 위해 갯벌이갈매기 번식기간 중에 5회에 걸쳐 공개제한지역인 통영흥도 갯벌이갈매기번식지에 출입허가를 신청하는 내용임
- 출입신청 인원은 7명, 1회 입도인원은 3~5명, 1회 입도시 4~5일 텐트에서 체류 예정임
- 촬영카메라와 드론을 사용하여 갯벌이갈매기의 번식생태 및 번식환경을 촬영하고, 수중촬영용 카메라를 사용하여 갯벌이갈매기의 먹이생물, 산호 등 흥도 연안의 수중생태계를 촬영 소개할 계획임
- 자연유산의 홍보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긴 하지만, 갯벌이갈매기의 번식 초기부터 후기까지 전체 번식기 동안에 5회에 걸쳐 3~5명이 4~5일간 숙식을 하면서 근접촬영, 드론 촬영 등 과도한 간섭행위는 갯벌이갈매기의 번식경과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신청사항은 번식 생태에 대한 과도한 간섭행위로 작용하여 꿩이갈매기 번식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부결 7명

※ 참고자료(촬영 기획안)

UHD 환경스페셜 천연의 보물섬 홍도

괭이갈매기와 수중생물의 천국, 통영 홍도의 비경과 생태를 담다



천연기념물 335호,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갈매기의 고향 홍도

천혜적 비경과 수중 생태계의 보고로 천연보존의 의의와 가치를 전한다

- 방송 : 2017년 하반기 (목) 밤 10시 *** 방영 예정 (편성변경가능)
- 구성 : 4K UHD 항공(드론) 및 지상촬영
- 연출 : *** 프로덕션3 **** PD

▣ 기획의도

1982년 천연기념물 335호로 지정된 통영 홍도는 괭이갈매기의 대표적인 서식지로 국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다. 1996년 등대가 무인화 된 뒤 사람의 발길이 끊긴 홍도는 천적이 없는 괭이갈매기의 천혜의 서식지로 번식기에 매년 2만 마리 가량이 날아들고 있다. 3월말 4월 초에 날아와 8월말 9월초에 떠나는 괭이갈매기의 짝짓기·번식·이소등의 과정의 생태를 담아본다. 아울러 바다 속 보물섬이라고 할 만큼 홍도는 다수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중 생태계의 보고이다. 자연에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천연 홍도 생태의 디테일한 의의와 가치를 담는다.

▣ 구성내용

1. 천혜의 비경 통영 홍도 - 한려해상국립공원 최남단의 보물섬

우리나라 최남동단의 무인등대섬 홍도

해식터널과 기암절벽의 절경을 4K 드론으로 소개

-통영으로부터 50.5km, 면적 98,380㎡의 섬 홍도. 독도 절반의 크기에 절경을 자랑

-해식동굴·해식터널이 발달, 1996년 무인화 된 최남동단의 등대가 뱃길을 밝힘

2. 홍도의 주인은 2만여 마리의 괭이갈매기 - 세계 최대의 괭이갈매기 번식지

-팽이갈매기의 군무

-우리나라의 대표적 바닷새 팽이갈매기(Black-tailed Gull) 소개

-해마다 3월말에서 4월초 2만여 마리의 팽이갈매기가 홍도를 번식을 위해 찾아옴.

-팽이갈매기의 울음소리 분석: 8가지의 음성신호를 낸다고 함

· Contactcall(Mewcall) 개체 간의 교감시 사용하는 신호(먹이채집 후 등지로 돌아올 때, 짝과 등지 보호 역할을 교대할 때, 새끼를 돌볼 때, 집단 비행을 할 때 등)

· Beggingcall: 새끼가 부모에게 먹이를 구걸할 때, 교미시기에 암컷의 소리, Contactall 해당

· Alarmcall: 포식자의 침입이나 위험상황을 주변에 알리는 짧은 경계성 음성신호

· Aggressivecall: 포식자를 공격할 때 내는 신호

3. 팽이갈매기의 생태와 번식

-팽이갈매기는 4월말~5월 짝짓기를 시작해 8월까지 번식을 함.

-20여년의 수명, 십 수 년 간 번식하며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짝과 번식한다고 함

-암컷의 먹이구애에 수컷이 먹이를 제공하면 암컷이 짝짓기에 응함

-포란 시 자기 알 외에도 주위의 물건들을 끌어당겨 포란하는 습성이 있음
(달걀, 돌맹이 실험)

-등지에 다른 종류의 새나 이웃 갈매기가 침범하면 공격을 함(거울 반응 실험 등)

-새끼가 부화한 후 알 껍질은 다른 곳으로 버림

-새끼는 어미의 목소리를 구별하며 어미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함(목소리 반응 실험)

-새끼가 혹여나 자기 등지를 잃고 다른 어미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여지없이 공격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함. 전체 부화한 알의 20%만 어미로의 성장에 성공한다는 연구가 있음

-밀사초 등지와 암초등지를 비교, 번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찰

-8월경 새끼갈매기의 비상과 이소

☞ *** / *** 단장

4. 나그네새와 팽이갈매기

-홍도에는 황로·벌매·노랑눈썹새등의 나그네새가 경유하기도 함

팽이갈매기와의 생존 및 영역 경쟁

-몇 년 전 나그네새를 위한 횃대·물받이 등이 설치되었는데 이의 효과 등 분석

5. 수중생태의 보고 홍도

-팽이갈매기는 수면에 있는 어종을 먹이로 채취, 홍도는 144종 수중 생태의 보고

-나팔고둥(멸종위기종 1급)의 불가사리 포식, 유착나무 돌산호(멸종위기종 2급), 진홍 나팔 돌산호(멸종위기종 2급), 해송(천연기념물 456호), 연산호군락지, 둔한진총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 복해마, 철갑등어, 갯민숭달팽이, 돌돔, 방어 등의 수중생태 소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중 생태의 변화 ☞ *** 해양연구센터

▣ 촬영계획

1. 홍도 입도 일정

- 일부기간은 홍도 갈매기 촬영과 수중 촬영을 병행

- 날씨, 섬의 갈매기 생태상황, 출연자 상황에 따라 촬영일자가 유동적임.

- 입도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세한 협의를 거쳐 세부일정 조정.
(필요하다면 입도 시마다 출입허가 신청서 제출)

- 1차 / 4.24(월) - 4.30(일) 중 5일 예상 / 짝짓기
- 2차 / 5.15(월) - 5.21(일) 중 4~5일 예상 / 포란, 부화, 수중생태
- 3차 / 6.5(월) - 6.11(일) 중 4일 예상 / 새끼양육, 개체간 경쟁, 수중생태
- 4차 / 6.26(월) - 6.30(일) 중 4일 예상 / 새끼성장, 수중생태, 날씨변화
- 5차 / 7.17(월) - 7.21(일) 중 4일 예상 / 날씨변화, 비행연습, 이소

2. 촬영스텝

- 가. *** / 총 1명
- 나. *** CAM 감독 신성일, 촬영보조 오디오 감독 / 총 2명
- 다. VJ ***, *** / 총 2명
- 라. 수중촬영 감독 *** / 총 1명
- 마. 출연 전문가 ***연구원 *** 조사연구부 단장 등 / 총 1명

촬영 기간에 따라 위 가~마의 조합으로 입도
필수 참여인원은 가(PD ***)와 나(***) 촬영팀)
다~마의 인원은 참여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음.
결과적으로 입도 인원은 3명~5명 선.

3. 촬영장비

- 가. UHD(4K) 촬영 카메라 또는 DSLR(소니 알파7, 캐논 5D Mark4등)
- 나. UHD(4K) 촬영 드론 인스파이어2
- 다. 수중촬영 카메라 장비(레드 하우징 등)

4. 체류방법

텐트로 숙박, 식사는 햇반 등과 건조 밀반찬을 이용 음식쓰레기 철저히 단속
쓰레기봉투로 모든 쓰레기 회수 철저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7-04-20

2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81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이동식화장실 개축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9-36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이동식화장실 개축 · 이동식 간이화장실(수세식, A=30㎡) 설치 및 오수처리 시설 설치(규모=10㎡) ○ 허가기간 : 2017.3.23. ~ 2017.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 증축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34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 연면적 121.4㎡, 최고높이 7.7m(2층) ○ 허가기간 : 2017.3.23. ~ 2018.4.30.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대저생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34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생활환경숲 조성 1식(9,700㎡)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식재면 고르기 등 2종), 식재공(교목-팽나무 등 4종 200주, 관목-좁작살나무 등 10종 12,260주, 초화류-수크령 등 13종, 기타-야자매트 및 잡석 포설, 관수시설 등), 자연석 의자 등 2종 시설물 설치 ○ 허가기간 : 2017.3.23. ~ 2017.6.30.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에코델타시티 2단계 3공구 지반조사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5003-11호 외 * 문화재구역 주변(허용기준1~5구역) - 사업내용 : 지질조사(시추) 14공(76mm) ○ 허가기간 : 2017.3.23. ~ 2017.5.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진목지구 연안정비공사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616-95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호안정비(L=120m) · 토공, 호안공(제체사석 채움, 피복석 설치 등), 부대공사 등 ○ 허가기간 : 2017.3.23. ~ 2022.4.30. ○ 허가조건 :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11월~2월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준수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입목벌채 및 수종갱신 -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293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허용기준 2~3구역) - 사업내용 : 벌채 459본, 식재 783본 ○ 허가기간 : 2017.3.23. ~ 2018.4.30.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입목벌채 및 수종갱신 -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지식리 산124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0m 이격(허용기준 3구역) - 사업내용 : 벌채 138본(상수리 모두베기), 식재 87본(호두나무) ○ 허가기간 : 2017.3.23. ~ 2018.4.30.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지열난방용 굴착 -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869-2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허용기준 3구역) - 사업내용 : 지열난방을 위한 굴착 2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깊이 150m, 지름 150mm ○ 허가기간 : 2017.3.23. ~ 2017.5.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지열난방용 굴착 -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50-20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허용기준 3구역) - 사업내용 : 지열난방을 위한 굴착 2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깊이 150m, 지름 150mm ○ 허가기간 : 2017.3.23. ~ 2017.5.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지열난방용 굴착 -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855-2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허용기준 3구역) - 사업내용 : 지열난방을 위한 굴착 2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깊이 150m, 지름 150mm ○ 허가기간 : 2017.3.23. ~ 2017.5.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대평지구 연안정비사업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794-2 지선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0m 이격(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 과제벽 246m, 안전난간, 통로계단 등 ○ 허가기간 : 2017.4.6. ~ 2017.10.30. 	<허가>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채집시설물 설치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귀동 973번지 외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무태장어 서식환경 모니터링 학술연구용 수중생물 채집시설물 설치(자망, 통발, 장어통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p>밭, 6구통밭 등)</p> <p>○ 허가기간 : 2017.4.6. ~ 2017.12.31.</p>	
	<p>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입목벌채 및 수종갱신 -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산340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20m 이격(허용기준 3구역) - 사업내용 : 벌채 137본(상수리, 아까시 등 모두베기), 식재 150본(매실나무), 부지면적 3,080㎡ <p>○ 허가기간 : 2017.4.10. ~ 2018.4.30.</p>	<p><허가></p>
	<p>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꼬리명주나비 서식지복원사업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07-2 외 * 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복원 · 쥐방울 덩굴(A=8,000㎡) 식재 및 덩굴식물 활착구조물 설치, 꼬리명주나비 이식 <p>○ 허가기간 : 2017.4.11. ~ 2017.11.30.</p>	<p><허가></p>
	<p>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이동식 화장실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52 외 * 문화재구역 인접(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 생태공원 이용객을 위한 이동식화장실(2개소, 3m*10.5m) 설치 <p>○ 허가기간 : 2017.4.11. ~ 2017.6.30.</p>	<p><허가></p>
	<p>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낙동강 하구 쓰레기 수거사업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179-114 진우도 일원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낙동강 하구 쓰레기 수거 · 장비사용-트랙터 1식, 임시천막 설치-진우도 및 신자도 각 1동(10*10*3m) <p>○ 허가기간 : 2017.4.18. ~ 2017.12.31.</p> <p>○ 허가조건 : 진우도와 신자도에 대한 정화사업은 여름철새 번식시기인 5~7월을 피하여 실시할 것</p>	<p><조건부 허가></p>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어업용 간이작업장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641-2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가설건축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용 간이 작업장(3.5*3m) 20개 설치(210㎡), 지상1층(2.2m), 경량철골구조(판넬) ○ 허가기간 : 2017.4.18. ~ 2017.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59호 어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관상어용 양식개발 사업 ○ 신청내용 : 어름치 3개체 포획 및 채란 후 방사 ○ 신청위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일원 	<불허>
	천연기념물 제496호 비단벌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비단벌레 생태 및 사육방법 연구 ○ 허가사항 : 비단벌레 1개체 사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경위 : 전남 완도군 당인리 해변에서 입수한 팽나무 고사목에서 우화한 개체 ○ 사육장소 : 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강원도 영월군)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해야 하며, 허가목적 이외로는 사육 불가 - 사육 중 폐사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즉시 신고한 후, 폐사체 처리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하여 별도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4호 새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새매 폐사체 소각 ○ 신청목적 : 치료중 폐사에 따른 소각처리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장수하늘소 포획 ○ 포획장소 : 강원도 인제군 점봉산 일대, 양양군 미천골 일대, 평창군 오대산국립공원 일대 ○ 수량 : 성충 2개체, 유충 2개체 ○ 허가기간 : 2017.3.23.~2017.9.29.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포획 수는 포획 허가 신청된 3개 지역을 모두 포함해 성충은 최대 2개체(암, 수 각 1개체), 미성숙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단계층은 최대 2개체만을 포획 허가함 - 포획 성공하는 경우 포획 시기 및 장소, 연구내용 등이 모두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 등 7종	○ 신청인 : ***** ○ 신청목적 : 폐사원인 분석을 위한 부검 및 소각 ○ 허가사항 : 폐사체 부검 및 소각 ○ 수량 : 큰고니 등 7종 13개체 - 큰고니 3, 새매 2, 재두루미 1, 황새 2, 참매 2, 원앙 1, 노랑부리저어새 2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신청인 : ***** ○ 허가사항 : 박제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 ○ 수량 : 1개체(박제일련번호 : 2017-강원-2) ○ 보관장소 : 국립공원관리공단 중북원기술원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 신청인 : ***** ○ 허가사항 : 박제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 ○ 수량 : 4개체(박제일련번호 : 2017-대전-1~4) ○ 보관장소 : 국립중앙과학관	<허가>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	○ 신청인 : ***** ○ 신청목적 : 번식생태 및 개체군 유전학 연구 ○ 허가사항 : 검은머리물떼새 포획 및 둥지조사 - 검은머리물떼새 유조 포획, 가락지 부착, 혈액 채취 후 방사(총 25개체) - 둥지 주변 소형 깃대 설치(최대 50개소) ○ 허가지역 : 충남 서천군 유부도, 전남 신안군, 인천 연수구 송도 ○ 허가기간 : 2017.4.5.~2017.8.30.	<허가>
	천연기념물 제496호 비단벌레	○ 신청인 : *** ○ 허가사항 : 표본 제작 ○ 신청목적 : 복원 및 증식을 위한 학술연구 ○ 수량 : 1개체(박제일련번호 : 2017-강원-3) ○ 보관장소 : 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강원도 영월군)	<허가>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장수하늘소 포획 ○ 포획장소 : 경기도 광릉숲 일대 ○ 수량 : 성충 2개체, 유충 2개체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기간 : 2017.4.6.~2017.9.29.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획은 기존 허가지역을 포함 성충은 최대 2개체, 미성숙단계충은 최대 2개체만을 허가함 - 포획 성공하는 경우 포획 시기 및 장소, 연구내용 등이 모두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 	
	천연기념물 제259호 어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어름치 포획, 계측 후 즉시 방사 ○ 신청목적 : 어름치 서식현황 모니터링 및 보존방안 연구 ○ 포획지역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일대 ○ 수량 : 최대 80개체 ○ 허가기간 : 2017.4.6.~2017.9.30.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구조된 산양의 치료 및 관리 ○ 허가사항 : 산양 2개체 사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인제군 장수대 일원에서 구조된 개체 ○ 사육장소 :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 허가기간 : 2017.4.18.~2019.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신청목적 : 수몰에 의한 번식 실패가 확실한 저어새 알을 안전하게 이동하여 저어새 번식 보존 ○ 허가사항 : 저어새 알을 안전한 등지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닷물 만조시 수몰이 확실시되는 저어새 알(30개 이하)을 수하암 내 번식시기가 유사한 안전한 저어새 등지로 이동 ○ 허가지역 : 인천광역시 영종도 앞 갯벌 내 수하암 ○ 허가기간 : 2017.4.18.~2017.5.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폐사체 소각 ○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소각처리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폐사체 매장 ○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매장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15호 흑비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폐사체 소각 ○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소각처리 ○ 수량 : 1개체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박제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 ○ 수량 : 3개체(박제일련번호 : 2017-충남-5~7) ○ 보관장소 : 예산황새공원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폐사체 조각 ○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조각처리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박제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 ○ 수량 : 1개체(박제일련번호 : 2017-경기-2) ○ 보관장소 : 고양생태공원 	<허가>
	천연기념물 제147호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가지 채취 - 사업위치 :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산58번지 - 사업내용 : 가지 채취 30점 ○ 허가기간 : 2017.03.22~2017.0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20호 괴산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가지 채취 - 사업위치 :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산144-2번지 - 사업내용 : 가지 채취 30점 ○ 허가기간 : 2017.03.22~2017.0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21호 괴산 울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가지 채취 - 사업위치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울지리 산19-1번지 - 사업내용 : 가지 채취 30점 ○ 허가기간 : 2017.03.22~2017.0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64호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가지 채취 - 사업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4-4번지 - 사업내용 : 가지 채취 30점 ○ 허가기간 : 2017.03.22~2017.03.31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70호 부안 미선나무 자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가지 채취 - 사업위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19-4번지 상서면 청림리 산228, 229 - 사업내용 : 가지 채취 30점 ○ 허가기간 : 2017.03.22~2017.0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노후 통제소 교체 및 신설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산220-13 등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노후 통제소 교체 및 신설(총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통제소 교체(2개소) : 어리목 탐방로 입구 1개소, 영실탐방로 입구 1개소 · 통제소 신설(2개소) : 관음사 탐방로 입구 1개소, 성판악 탐방로 입구 1개소 · 통제소 규격(폭×길이×높이) : 2,330mm×3,250mm×2,850mm · 통제소 하단 방부목 데크 설치 : 4,500mm×5,750mm ○ 허가기간 : 2017.03.21~2018.03.20 	<허가>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안내판 정비사업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44-7, 색달동 3381-10, 서홍동 665, 2565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천제연 난대림 및 천지연 난대림 안내판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제연 난대림 : 종합 안내판 신설 2개소, 교체 1개소 (1,800mm×2,100mm×150mm), 기존 안내판(선인지 이용 안내문) 이설 1개소 · 천지연 난대림 : 종합 안내판 신설 1개소(1,800mm×2,100mm×150mm), 방향표지판 신설 3개소, 교체 1개소(H=2.5m) ○ 허가기간 : 2017.03.21~2018.03.20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태풍 피해 복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산15-1 등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태풍 피해 복구(어리목지구 등 5개소)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리목지구 : 한밭교 목재난간 5경간, 교대 기초 2개소, 하상정리 158㎡ • 영실지구 : 데크복구(L=1140m, B=1.5m), 석축복구 (L=200m, H=2.1m) • 관음사지구 : 데크복구(L=179.68m, B=1.5m), 난간데크복구 (L=214.25m, B=1.5m), 난간복구(L=30.0m) • 성관약지구 : 데크복구(L=322.0m, B=1.5m) • 돈내코지구 : 세월교 2개소 복구, 데크복구(L=122.0m, B=1.5m) <p>○ 허가기간 : 2017.03.21 ~ 2018.03.20</p>	
	<p>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상호원 숲속야영장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동 산23번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364m) - 사업내용 : 상호원 숲속야영장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 • 진입로 개설 : 신설 140m(B=4.0m, A=970㎡) 기존 임도 이용 180m(A=810㎡) • 주차장 설치 610㎡(소형 19면) • 수목벌채 해송 등 57주, 벌채재적 11.65㎡ <p>○ 허가기간 : 2017.03.28 ~ 2018.03.27</p>	<p><허가></p>
	<p>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탐방로 흠먼지털이기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평대리 산15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탐방로 흠먼지털이기 설치(1개소) • 흠먼지 털이기 1개소(W3,200mm×L2,000mm×H2,500) : 저소음 브러쉬에어건 4개 • 패드기초(콘크리트 T=200mm + 보조기층 T=200mm) : 7.48㎡, 맨홀 1개소 • 전선관 매설 85m <p>○ 허가기간 : 2017.03.31 ~ 2018.03.30</p>	<p><허가></p>
	<p>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상일출봉천연보호구역</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14-3(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63m 이격)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공공급속 충전기 설치 • 충전기 설치 2대(1,635.1mm × 902.2mm × 710mm) → 충전기 패드(1,850mm × 1,100mm × 400mm) 2개소(4.070㎡) • 분전반 설치 1대(1,400mm × 650mm × 250mm) 	<p><허가></p>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전반 패드(580mm × 450mm × 400mm) 1개소(0.261m²) · 주차면 (5,000mm × 3,000mm) 2대(30.0m²) 포함 총 면적 : 34.331m² · 전력간선 매립 설치 28m <p>○ 허가기간 : 2017.03.31 ~ 2018.03.30</p>	
	<p>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666-2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공공급속 충전기 설치 · 충전기 설치 2대(캐노피 포함 2,000mm × 1,400mm × 1,350mm) → 충전기 패드(1,850mm × 1,100mm × 400mm) 2개소(4.070m²) · 분전반 설치 1대(1,400mm × 650mm × 250mm) → 분전반 패드(580mm × 450mm × 400mm) 1개소(0.261m²) · 주차면 (5,000mm × 3,000mm) 2대(30.0m²) 포함 총 면적 : 34.331m² · 전력간선 매립 설치 149m(노출 84m, 매립 65m) · 핸드홀 설치 2개소(600mm×600mm×600mm) <p>○ 허가기간 : 2017.03.31 ~ 2018.03.30</p>	<허가>
	<p>천연기념물 제422호 차귀도천연보호구역</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고산항 물양장 정비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15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고산항 물양장 정비 · 기존 물양장 증고 : 60m(L=3.7m, H=1.1m) · 기존 방파제 개선(물양장) : 40m(L=4.2m, H=2.0), 3단 계단 (1단 높이 0.3m)포함 · 구조 : 콘크리트 직립제 <p>○ 허가기간 : 2017.03.31 ~ 2018.03.30</p>	<허가>
	<p>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 상호동 한란자생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한란전시관 증축 및 주변정비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동 1421-9, 10, 14, 15(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한란전시관 증축 및 주변정비 1) 한란전시관 증축 : 30.30m² · 건축면적 : 기존 396.38m²(방문객센터 297.78m², 화장실 98.60m²) → 변경 426.68m² (방문객센터 328.08m², 화장실 98.60m²) · 연면적 : 당초 1,440.17m² → 변경 1,470.47m²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적을 산정 연면적 : 당초 276.64m² → 변경 306.94m² · 건폐율 : 당초 4.30% → 변경 4.63% · 용적률 : 당초 3.00% → 변경 3.33% 2) 주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주석 포장부 철거 9.45m² · 스틸그레이팅 설치 31.58m · 기존 잔디 제거 후 재식재 : 10.26m² · 이중벽관 설치 11.70m ○ 허가기간 : 2017.03.31 ~ 2018.07.31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태풍피해 복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남원읍 하례리 1859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효돈천 지류(구거) 태풍피해 복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 L=471.0m(양측) · 호안 전석쌓기[(B=1.1m H=2.3m(기울기 1:0.5)) : A=1,677m² (좌 1,014.98m³, 우 661.81m³) · PC암거(5.0m×2.0m) 1개소(L=15.0m) · 콘크리트 포장(T=15cm) : 235m²(좌 B=3.0m, L=26.10m, 우 B=3.0m, L=46.90m) ○ 허가기간 : 2017.04.03 ~ 2018.04.02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태풍피해 복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남원읍 하례리 1837번지 201호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효돈천 지류(오렌지농장 일원) 태풍피해 복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 L=268.4m(양측) · 호안 전석쌓기[(B=1.1m H=2.3m(기울기 1:0.5)) : A=519.66m² (좌 255.60m³, 우 264.06m³) · PC암거(5.0m×2.0m) 1개소(L=15.0m) · 콘크리트 포장(T=15cm) : 1,590m²(좌 B=3.0m, L=250.50m, 우 B=3.0m, L=249.20m) ○ 허가기간 : 2017.04.03 ~ 2018.04.02	<허가>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포토존 데크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p>(문화재구역 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제주 천제연 난대림 내 포토존 데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침목 철거 : 5.58㎡ · 데크 설치 : 11㎡ · 목제난간 설치 : 10경간(L=12.3m) <p>○ 허가기간 : 2017.04.06 ~ 2018.04.05</p>	
	<p>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야외공연장 보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656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제주 천지연 난대림 내 야외공연장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크포장 철거(T=25mm) : 37㎡ · 자연석 석축 쌓기(H=0.2~0.96m) : 15.10m · 화강석 판석깔기(T=50mm) : 30㎡ <p>○ 허가기간 : 2017.04.06 ~ 2018.04.05</p>	<p><허가></p>
	<p>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봉정암 (구)적멸보궁 및 발전기실 정비 -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76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봉정암 (구)적멸보궁 및 발전기실 정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적멸보궁 보수(당초 면적 129.88㎡ → 보수 후 면적 124.72㎡, 감 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계단 설치 1개소(B=2,100mm(최대), L=5,055mm, H=1,120mm (매립 500mm 포함)) 2) 발전기실 증축(증 23.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면적 40.07㎡ → 증축 후 면적 63.89㎡ 3) 범종루 주변 석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옹벽 및 판석 해체 보수(옹벽 5.8m(H=3.0m), 판석 7.0m(H=2.15m)) · 마름돌 해체 보수 L=7.75m, H=2.15m · 마름돌 석축 보축 L=5.85m, H=0.25m <p>○ 허가기간 : 2017.04.07 ~ 2018.04.06</p>	<p><허가></p>
	<p>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진달래밭화장실 개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남원읍 하례리 산7(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진달래밭화장실 개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장실 개축 	<p><허가></p>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연면적 : 96.3m²/96.3m² • 용적율/건폐율 : 19.57%/19.57% • 건물최고높이 5.1m • 구조 및 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 1층 • 외부마감 : 현무암쇄석, 투명복층유리 • 용량 및 분뇨처리방법 : 대변기 17(남 6, 여 11), 소변기 6, 무방류순환수세식시스템(5,000명/일) <p>2) 기타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데크 철거 42m², 제주돌쌓기 69m², 현무암관석 깔기 166.4m²(부정형 모르타르 포함 127m², 부정형 39.4m²) • 중수도처리시설 설치 1개소 : 12.2m(가로)×9.2m(세로) × 8.98m(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매몰 6.4m, 지상부 노출 2.5m 슬라브 상부 1.3m 노출 외 처리시설 출입구 (폭 2.1m ×높이2.5m) 포함 • 토목공사: 전체터파기 1,100.2m², 되메우기 599.5m², 잔토 흙쌓기 500.7m², 평매 붙이기 316.5m² <p>○ 허가기간 : 2017.04.24 ~ 2018.04.23</p>	
	<p>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친환경 대체취수원(어승생지구) 개발사업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64번지 1호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7km 이격) - 사업내용 : 친환경 대체취수원(어승생지구) 개발사업 (총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천공 : 4공, 굴착구경 200~400mm, 심도 480m • 상수관로 매설 : L=608.8m, D=100~200mm • 양수장(4개소) : 개소당 면적 4.84m²(가로 2.2m*세로 2.2m), 최고높이 2.95m • 보호공(4개소) : 개소당 면적 4.32m²(가로 2.5m*세로 1.9m), 최고높이 1.2m <p>○ 허가기간 : 2017.04.10 ~ 2018.04.09</p> <p>○ 허가조건 : 취수원 개발사업 시 지형·지질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함</p>	<p><조건부허가></p>
	<p>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천연보호구역</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홍도 보건소 신축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94-1호 (문화재구역 내) 	<p><조건부허가></p>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홍도 보건소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 583.70㎡(기존 268.90㎡ + 금회 314.80㎡) · 연 면 적 : 1,209.80㎡(기존 268.90㎡ + 금회 940.90㎡) · 건물높이 : 14.9m(3층)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정화조매립 : 단독정화조 70인용 · 건물 배면 경사지 콘크리트 옹벽 3단 설치(H= 4m, 총길이=78.4m) ○ 허가기간 : 2017.04.13~2018.04.12 ○ 허가조건 : 콘크리트 옹벽 상단면에 향토수종 관목을 심어 경사지 사면 경관을 개선할 것 ※ '16.02.29.자로 조건부 허가되었으나 사업지연으로 기간 만료되어 재신청된 건임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태안 신구리 해안사구 - 사업내용 : 문화재구역 CCTV 감시 장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시설 : 지주, 카메라, 무선전송장치, 스피커, 태양광발전장치 ○ 허가기간 : 2017.5. 1 ~ 2018.6.30 	<허가>
	천연기념물 제263호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39-5, 산38-1 - 사업내용 : 산굼부리 둘레 펜스 및 전망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펜스 설치 : 총길이 1.6km, 높이 1.8m, 지면에서 30cm 동물출입 구간 · 전망대 설치 : 가로 23m, 세로 3.5m, 난간 1.5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의 설계 검토를 받고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 ○ 허가기간 : 2017.3.27.~2017.12.31.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342호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촬영 : 20장 내외, 영상촬영 : 약 20분 분량 - 채취·반출 : 동굴 내 미생물 ○ 허가기간 : 2017.4.10.~2017.4.14 (중 1회) 	<허가>
	천연기념물 제391호 용진군 백령도 사곶 사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용진군 백령명 진촌리 사곶지선 - 사업내용 : 양식어장 2개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마, 미역 양식어장 2개소(8호:12ha, 9호:11ha) 운영 ○ 허가조건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에서 떨어져 나온 미역이나 다시마가 사곶 해변 해안가로 밀려 왔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 해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허가기간 : 2017. 6. 1~2022. 5.31 	
	천연기념물 제384호 제주 당치물동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제주시 월정소로 16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처리장(반응조1개소, 유량조정조1개소) 간선관로 15.1km · 유지관리동 : 건축면적 2,804.46㎡, 연면적 : 2765.98㎡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 중 진동측정 및 변위계측 실시 - 굴착공사시 전문가 입회하에 동굴에 미치는 진동의 영향이 최소화 될수 있는 공법을 사용 - 공사완료후 결과보고서 제출 등 ○ 허가기간 : 2017. 4.12~2019. 6.30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우도 홍조단괴해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추조사 : 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리 2656 도로(남북 2개소), 연평리 2512-3 대지 (화장실), 연평리 2473-1 도로 - 비파괴조사(GPR 탐사) : 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조단괴 해변 해변 지역 2개소, 연평리 2656와 해변 도로와 해변, 연평리 2512-3와 해변 대지 (화장실) 전면과 해변, 연평리 2473-1 도로 ○ 허가기간 : 2017. 4. 5. ~ 2017. 6.30. 	<허가>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우도 홍조단괴해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취·반출내용 : 7개 정점당 퇴적물 500g 시료 채취 및 반출 - 채취방법 : 해저 지질 채집기(채니기)를 사용하여 채취 - 반출지 : 제주대학교 지구해양학과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에 의하여 허가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채취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함 - 채취 기술담당자의 채취 작업 시 관리단체 담당직원이 현지 감독 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완료 후 채취 수량, 현황사진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 제출 ○ 허가기간 : 2017. 3. 7. ~ 2017. 6.22. 	<조건부 허가>
	명승 제1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조건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부안 채석강 적벽강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부안 채석강 적벽강 일원 내 유실법면정비 - 사업위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번지 21호 - 사업내용 : 토사유실 법면 정비(L=250m, H=1~2m)구간에 룬생백설치 ○ 허가기간 : 2017.3.28.~2017.12.31. ○ 허가조건 : 유실법면 정비를 위한 룬생백의 사용 흡은 외부에서 유입된 흡을 사용하지 말고 지역 내 흡을 사용하고 초화류는 주변 식생과 어울리도록 참싸리, 산국, 구절초, 비수리 등을 사용할 것 	허가>
	명승 제15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내 걷고 싶은 길 조성 - 사업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흥현리 748번지 1호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비포장길 조성, 안내판 설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몰이살피길(L=500m, W=1~1.8m), 길방향표지판 2개소, 안내판 1개소 · 상수리길(L=200m, W=1.5~2m), 길방향표지판 3개소, 안내판 1개소 · 망수길(L=570m, W=1.2~1.8m), 길방향표지판 2개소, 안내판 1개소 ○ 허가기간 : 2017.4.7.~2017.12.31. 	<허가>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부산 영도 태종대 내 영동 등대 휴게동 차양막 설치 - 사업위치 : 부산 영도구 동삼동 1054번지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L= 12.6m, W= 2.6~3.8m, H=3.4m, A=24.99㎡ · 위치 : 바다 반대편, 휴게동 진입로 입구 · 휴게동 건축면적 : (당초) 134.85㎡ → (변경) 159.84㎡(차양막 설치 증가분) ○ 허가기간 : 2017.4.3.~2017.12.31. ○ 허가조건 : 차양막 색채는 원색을 회피하고 문화재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로 할 것 	<조건부허가>
	명승 제18호 소매물도 등대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소매물도 등대섬 내 선착장 태풍 피해 복구공사 - 사업위치 :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5번지 (문화재구역 내)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선착장 확장 : (당초) W=30m, L=13.7m, H=3.4 (변경) W=30m, L=13.7m, H=3.7 · 안전교량 재설치 : 규모 확장 없이 철거 후 재설치 (B=1.8m, L=12m) · 수중 내 사석 및 피복석 강화 :(당초) 0.5m³/EA → (변경) 6 m³/EA 피복블록 설치 · 설치방법 : 내륙에서 제작한 시설물을 바지선을 이용해 소 매물도에서 조립하여 설치함 <p>○ 허가기간 : 2017.4.13.~2018.3.31.</p>	
	명승 제23호 봉화 청량산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봉화 청량산 내 금탑봉~경일봉 구간 등산로 데크설치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74번지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목재데크 및 계단 설치(2개소, 총 L=80m, B=1.5m) (A구간)L=16m, B=1.5m, (B구간)L=64m, B=1.5m <p>○ 허가기간 : 2017.4.3.~2017.12.31.</p>	<허가>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내 매표소 비가림막 설치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277번지(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매표소 비가림막 설치(25.75m²) · 건축/연면적 (당초)49.82m² → (변경)75.57m² <p>○ 허가기간 : 2017.4.18.~2017.12.31.</p> <p>○ 허가조건 : 매표소의 비가림막은 원색은 회피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할 것</p>	<조건부 허가>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내 주차장 CCTV설치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77번지, 273번지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CCTV 3개 설치 · 폴대(2개소, H= 5m, W=0.15m(원형), 기초콘트리트 (0.2*0.2*0.5)설치 · 모니터링은 정방폭포 관리사무소에서 실시, 별도 배관 매 립 설치 없음 <p>○ 허가기간 : 2017.4.18.~2017.12.31.</p> <p>○ 허가조건 : CCTV 폴대 및 기기의 외관색은 기와색(짙은 회색)등으로 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할 것</p>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속리산 법주사 일원 내 동암교 재축공사 - 사업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310번지 89 - 사업내용 : 동암교 재축공사(L=20m, B=4.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동암교 시설물 철거(콘크리트 구조물) :1식 · 신설 다리 주변 자연석 석축 쌓기: L=20m, H=25m, A=85m² · 신설 다리 진입부 흙다짐 : 119m² · 하천 유량 조절을 위한 하상 정리: L=31m, B=11~20m, A=567m² · 임시통행 가교 설치 : L=20m, B=1.5m) · 수목 제거 및 수목 식재 : 10주 ○ 허가기간 : 2017.4.24. ~ 2018.12.31. ○ 허가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에 붙이는 판석의 외부 표면 가공은 거친면을 사용하여 자연스런 질감과 색채가 나도록 함 - 신설 다리 주변 자연석 석축 쌓기는 전통 장대석 쌓기 형식으로 하고, 석재 표면 가공은 흑두기를 하여 시행 - 교량 난간은 엄지기둥 사이에 동자주 3개가 있는 연꽃문양으로 시공하되 난간 지대석의 높이를 최소 높이 200~250mm가 되도록 변경 시행 - 지대석과 기둥의 접합부에 사용되는 구조보강용 삽입 철물은 녹이 슬지 않고 방수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할 것 - 수목 10주 식재 수종은 전통 수목으로 식재 (예시 : 매죽나무, 단풍나무, 쪽동백나무, 산딸나무 등) 	<조건부허가>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선체험관 등 신축 -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 사업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문화 체험장(1동): 건축면적 285.12m², 높이 10.615m 한식목구조(정면 7칸, 측면 5칸, 2교주 7량, 팻배지붕, 겹처마, 이익공) 2) 삼문(1동): 건축면적 25.2m², 높이 4.555m 한식목구조(정면 3칸, 측면 2칸, 3량, 팻배지붕, 홑처마, 초익공) 3) 사주문(1동): 건축면적 5.76m², 높이 4.740m 한식목구조(정면 1칸, 측면 2칸, 3량, 팻배지붕, 초익공) 4) 주변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석 석축: L=242m, H=1.5m · 자연석 배수로 설치: L=95m, W=0.45m, 집수정 6개소 · 한식 외편담장 설치: L=145m, H=1.5m · 계단 2개소: 삼문(L=8m, W=2.4m, H=4m), 사주문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L=2.1m, W=2m, H=1.5m) · 대방 3개소: 좌우(L=1.98m, W=2.88m, H=1.2m), 중앙(L=1.98m, W=4.08m, H=1.2m) ○ 허가기간 : 2017.4.7.~2019.12.31.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서울 백악산 일원 내 군작전용 공작물 개축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산6번지 27호 - 사업내용 1) 북0진지(서울 종로구 평창동 산6-21번지) - 콘크리트벽 개축 : 기존 (98.9 m ² ×2동, 높이 1.5m, 다각형 모양) → 변경(80.1 m ² ×2동, 높이 1.5m, 'ㄷ'자 모양) 2) 성0진지(서울 종로구 삼청동 산2-1번지) - 콘크리트벽 개축 : 기존(98.9 m ² ×1동, 높이 1.5m, 다각형 모양) → 변경(80.1 m ² ×2동, 높이 1.5m, 'ㄷ'자 모양) - 전원 공급실 신축 : 샌드위치 판넬조 14m ² ○ 허가기간 : 2017.3.21~2017.12.31.	<허가>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제주 서귀포 산방산 내 산방굴사 관람로 계단정비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 16번지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기존 자연석계단 경사완화 등 정비 : 폭2.0m, 길이23.4m · 스텐레스 난간 설치 : 높이 1.2m, 길이245m ○ 허가기간 : 2017.4.24.~2018.3.31. ○ 허가조건 : 산방굴사 관람로 계단 난간 설치 시 기존 인조목 난간은 철거하지 말고 설치하며 스텐레스 난간은 무광택 소재의 재질을 사용할 것	<조건부 허가>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제주 서귀포 산방산 내 산방굴사 매표소 이전 설치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693번지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기존 입구 매표소는 산방산 관리사무소로 사용 · 신규 매표소 설치 : 산방굴사 기념품가게 서측 옆으로 위치 변경하여 신설 (대지면적 : 26.967m ² , 건축면적 18.32m ² , 높이 3.1m(1층, 평지붕), 경량철골조) ○ 허가기간 : 2017.4.24.~2018.3.31.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p>명승 제108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p>	<p>○ 허가조건 : 이전 신설될 산방굴사 대표소 외관은 현무암 판석으로 하되 겉모양이 흑두기가 난 것처럼 현무암의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부착할 것(예시 흑벽석 등)</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p>- 사업명 :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주변 농업용기설건축물 축조</p> <p>-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저종 121번지 1호 (문화재로부터 54m 이격, 허용기준 1구역)</p> <p>- 사업내용</p> <p>○ 허가기간 : 2017.3.27.~2017.7.31.</p> <p>○ 허가조건 : 경포호 해변에서 창고가 보이지 않도록 창고에서 해변방향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차폐함 (예시: 사계절 푸른잎이 있는 소나무, 사철나무, 향나무 등)</p>	<p><조건부 허가></p>
<p>허가 사항 변경 허가</p>	<p>천연기념물 제74호 봉화대현리 열목어서식지</p>	<p>○ 신청인 : ***</p> <p>○ 허가사항</p> <p>- 사업명 :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p> <p>-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389-20</p> <p>* 문화재구역 내</p> <p>- 사업내용 : 농가주택 및 농업용창고 신축</p> <p>· 농가주택 : (당초) 건축면적 101.68㎡, 연면적 93.6㎡, 1층, 일반목구조, 한식기와집 → (변경) 건축면적 107.80㎡, 연면적 99.0㎡, 1층, 일반목구조, 한식기와집</p> <p>· 농업용 창고 : 면적 18㎡, 1층, 경량철골조(변경없음)</p> <p>○ 허가기간 : 2017.3.27. ~ 2017.6.30.</p> <p>○ 허가조건</p> <p>- 공사 시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p>	<p><허가사항 변경허가 조건부 허가></p>
	<p>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p>	<p>○ 신청인 : ***, ***</p> <p>○ 허가사항</p> <p>-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p> <p>-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50-199</p> <p>*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40m 이격(허용기준 3구역)</p> <p>-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p> <p>· (당초) 건물 12동, 진입로 1,001㎡ 등 신축</p> <p>· (변경) 건물 15동, 진입로 1,350㎡ 등 신축</p> <p>○ 허가기간 : 2014.12.22.~2018.12.30.</p> <p>○ 허가조건 : 당초 허가조건을 준수(강화갯벌을 마주하는 도로 주변으로 소나무를 식재하여 경관을 유지할 것)</p>	<p><허가사항 변경허가 조건부 허가></p>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534호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 1,997.16㎡(법정면적 1,064.24㎡) - 연면적 : 1,757.286㎡(법정면적 66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 수장고, 보호각(3동) 등 - 구조 : 철근콘크리트(전시관)-곡선입면, 보호각(철골조) - 최고높이 : 11.6m - 주변 환경정비 :조경, 석축 설비 및 주차장 조성 등 <변경허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장고 유물반입로 서측 보호옹벽 구조물 형태변경 · 당초 : L형 콘크리트 옹벽(진입로 폭 :7.7m) · 변경 : 자연석 석축옹벽(진입로 폭 : 6.2m) - 보호각 1. 2 면적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보호각 1면적 49.5㎡, 보호각2면적 78.75㎡ · 변경 : 보호각 1면적 0㎡, 보호각2면적 128.3㎡ (증 49.5㎡) - 보호각 지붕높이(정면 G.L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보호각2 높이 4.93m, 보호각3 높이 5.04m · 변경 : 보호각2 높이 3.33m, 보호각3 높이 3.33m - 태양광 위치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 현 주차장 입구(인접대지경계선3.0m 이격) · 변경 : 현 주차장 입구(인접대지경계선4.5m 이 - 허가기간 : 2016. 9. 20 ~ 2018. 3. 20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 가설 펜스 및 안내판은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12호)을 준수하여 설치 - 공사구간 내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가설 펜스를 사면에 설치하고 공사 안내판 등은 조망이 잘 되는 곳에 충분히 설치 - 보호구역 내 보관중인 화석은 공사 중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천막 등) 조치 강화 -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화석산출 지층면에 대한 강화처리 후 복토 등 보존처리를 강구 및 조치. 	<허가사항 변경허가>

나.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접수 7명